

서울원 아이파크 입주자모집공고(정정)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2024.11.15.(금) 공고한 '서울원 아이파크 입주자모집공고'를 아래와 같이 정정 공고 합니다.

■ 변경 내용 1

구분	변경전(기존 7page)	변경후(8page)
층 표기 정정	59A 59A 105동 5호 40~41F	59A 105동 5호 40~45F

■ 변경 내용 2

구분	변경전(기존 15page)	변경후(15page)
동(안) 표기 정정	145P 145P 103,4,5,6동 4호	145P 103,4,5,6동 5호
	159P 159P 103,4,5,6동 3호	159P 103,4,5,6동 4호

■ 변경 내용 3

변경 전(기존 74page)		
시설구분	분양동 (공공임대 포함)	민간임대동
법정시설1 (공유형)	어린이놀이터(TOWER A,102동,104동,105동 측면) / 주민운동시설(101동, 102동,103동,104동,105동,106동 필로티하부) / 어린이집(101동,104동,105동 하부 설치) / 작은도서관(각동 하부) / 다함께돌봄센터(104동 하부 설치)	좌동
법정시설2 (단독형)	경로당 (103동,106동 하부 설치)	경로당 (TOWER B 하부 설치)
특화시설	피트니스 / GX / 골프연습장/ 맘스라운지 / 독서실 티라운지(103,104동)/ 키즈라운지/ 코인세탁실 등 (각동 하부 설치)	피트니스 / 골프연습장 / 프로그램실 / 로비라운지/ 카페테리아/ 건강관리실/ 사우나 등 (각동 하부 설치)
관리비용	분양동 법정시설 / 특화시설 분양동 부담	임대동 법정시설 / 특화시설 임대동 부담
변경 후(75page)		
시설구분	분양동 (공공임대 포함)	민간임대동
법정시설1 (공유형)	어린이놀이터(TOWER A,102동,104동,105동 측면) / 주민운동시설(101동, 102동,103동,104동,105동,106동 필로티하부) / 어린이집(101동,104동,105동 하부 설치) / 작은도서관(2개동 단위로 하부 설치) / 다함께돌봄센터(104동 하부 설치)	좌측 시설 공유
법정시설2 (단독형)	경로당 (103동,106동 하부 설치)	경로당 (TOWER B 하부 설치)
특화시설	피트니스 / GX / 골프연습장/ 맘스라운지 / 독서실 티라운지(103,104동)/ 키즈라운지/ 코인세탁실 등 (2개동 단위로 하부 설치, 101-102동 / 103-104동 / 105-106동)	피트니스 / 골프연습장 / 프로그램실 / 로비라운지 / 건강관리실 / 사우나 등 (2개동 단위로 하부 설치 / TOWER A-B동)
관리비용	분양동 법정시설 / 특화시설 분양동 부담	임대동 법정시설 / 특화시설 임대동 부담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2024.11.15일 포함)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 및 청약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02-568-3032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거주자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없음	1년	없음		미적용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4.11.15.(금)	24.11.25.(월)	24.11.26.(화)	24.11.27.(수)	24.12.04.(수)	24.12.05.(목)~24.12.13(금)	24.12.16.(월)~24.12.19.(목)

※ **공통 유의사항**

- '서울원 아이파크' 콜센터(☎02-568-3032) 및 공식 홈페이지(<https://www.seoulone-ipark.co.kr/>)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기사항증명서 및 소득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의 청약 자격 확인 및 청약가상체험을 통하여 착오 신청 등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계약취소주택,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1순위(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가입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의 지역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 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주택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 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제1호가목2)의 기준에 따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동점 시 추첨)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seoulone-ipark.co.kr/>)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될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 * 종전통장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청약하는 경우,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민영주택 청약 시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산정(단 국민주택 청약 시 기존 청약통장이입일을 기준으로 순위산정)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APT (특별공급 / 일반공급 1·2순위)	○			○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11.15(금)**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내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당첨자발표	당첨자격확인 서류접수	계약체결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일 정	24.11.25.(월)	24.11.26.(화)	24.11.27.(수)	24.12.04.(수)	24.12.05.(목)~24.12.13(금)	24.12.16.(월)~24.12.19.(목)
방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시) 견본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모바일) 청약홈 개별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본주택 방문(10:00 ~ 17:00) :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들로1길 45 ※ 반드시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자격 확인서류 : 당사 홈페이지 참고) - 접수된 서류는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되지 않음 ※ 접수건수 과밀 시 접수일정 및 운영시간 변경될 수 있음 ※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및 동·호수 추첨, 계약체결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해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해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은 불가함)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9항에 의거 국방부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자는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PC, 모바일) 청약만 가능 (건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 노원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기준일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당첨자 발표일	1년	1년

1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노원구청 미래도시과 - 5909호(2024.11.15.)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85-7번지 일대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4층, 지상 최고47층, 6개동, 총 2,264세대 (공공임대408세대 포함) 중 일반분양 1,856세대

[특별공급 490세대 : 일반(기관추천) 75세대, 다자녀가구 173세대, 신혼부부 134세대, 생애최초 64세대, 노부모부양 44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8년 7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m², 세대]

주택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타입)	주택공급면적(m ²)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부양	계		
민영 주택	2024-000659	1	059.8281A	59A	59.8281	23.7056	83.5337	35.8674	119.4011	16.3105	32	3	3	5	2	-	13	19	3
		2	072.1489A	72A	72.1489	28.4136	100.5625	43.2538	143.8162	19.6694	32	3	3	5	2	-	13	19	1
		3	072.1489B	72OA	72.1489	28.4136	100.5625	43.2538	143.8162	19.6694	3	-	-	-	-	-	0	3	-
		4	072.1489C	72OB	72.1489	28.4136	100.5625	43.2538	143.8162	19.6694	5	-	-	-	-	-	0	5	1
		5	074.9528A	74A	74.9528	28.7554	103.7082	44.9347	148.6429	20.4338	33	3	3	5	2	-	13	20	1
		6	074.9528B	74OA	74.9528	28.7554	103.7082	44.9347	148.6429	20.4338	8	-	-	1	-	-	1	7	1
		7	074.9528C	74OB	74.9528	28.7554	103.7082	44.9347	148.6429	20.4338	3	-	-	-	-	-	0	3	-
		8	084.3174A	84A	84.3174	31.1339	115.4513	50.5489	166.002	22.9868	260	26	26	46	23	7	128	132	4

9	084.6615B	84B	84.6615	30.9053	115.5668	50.7552	166.3220	23.0806	260	26	26	46	23	7	128	132	4
10	084.3174C	84OA	84.3174	31.1339	115.4513	50.5489	166.0002	22.9868	36	3	3	6	3	1	16	20	-
11	084.3174D	84OB	84.3174	31.1339	115.4513	50.5489	166.0002	22.9868	40	4	4	7	3	1	19	21	4
12	084.6615E	84OC	84.6615	30.9053	115.5668	50.7552	166.3220	23.0806	36	3	3	6	3	1	16	20	-
13	084.6615F	84OD	84.6615	30.9053	115.5668	50.7552	166.3220	23.0806	40	4	4	7	3	1	19	21	4
14	091.7708A	91A	91.7708	34.2300	126.0008	55.0172	181.0180	25.0187	138	-	13	-	-	4	17	121	2
15	091.7708B	91OA	91.7708	34.2300	126.0008	55.0172	181.0180	25.0187	20	-	2	-	-	-	2	18	2
16	091.7708C	91OB	91.7708	34.2300	126.0008	55.0172	181.0180	25.0187	18	-	1	-	-	-	1	17	-
17	105.5415A	105A	105.5415	35.7317	141.2732	63.2729	204.5461	28.7729	260	-	26	-	-	7	33	227	4
18	105.5415B	105OA	105.5415	35.7317	141.2732	63.2729	204.5461	28.7729	36	-	3	-	-	1	4	32	-
19	105.5415C	105OB	105.5415	35.7317	141.2732	63.2729	204.5461	28.7729	40	-	4	-	-	1	5	35	4
20	112.3989A	112A	112.3989	41.0662	153.4651	67.3839	220.8490	30.6424	138	-	13	-	-	4	17	121	2
21	112.3989B	112OA	112.3989	41.0662	153.4651	67.3839	220.8490	30.6424	20	-	2	-	-	-	2	18	2
22	112.3989C	112OB	112.3989	41.0662	153.4651	67.3839	220.8490	30.6424	18	-	1	-	-	-	1	17	-
23	120.6467A	120A	120.6467	41.5555	162.2022	72.3286	234.5307	32.8909	260	-	26	-	-	7	33	227	4
24	120.6467B	120OA	120.6467	41.5555	162.2022	72.3286	234.5307	32.8909	36	-	3	-	-	1	4	32	-
25	120.6467C	120OB	120.6467	41.5555	162.2022	72.3286	234.5307	32.8909	40	-	4	-	-	1	5	35	4
26	143.3468	143P	143.3468	50.1617	193.5085	85.9374	279.4459	39.0795	8	-	-	-	-	-	0	8	-
27	145.9565	145P	145.9565	50.4784	196.4349	87.5020	283.9369	39.7910	8	-	-	-	-	-	0	8	-
28	159.4358	159P	159.4358	53.3945	212.8303	95.5829	308.4132	43.4657	8	-	-	-	-	-	0	8	-
29	161.6674	161P	161.6674	55.6399	217.3073	96.9208	314.2280	44.0741	8	-	-	-	-	-	0	8	-
30	167.3881	167P	167.3881	57.7706	225.1587	100.3504	325.5090	45.6337	4	-	-	-	-	-	0	4	-
31	170.1115	170P	170.1115	58.7801	228.8916	101.9830	330.8746	46.3761	4	-	-	-	-	-	0	4	-
32	244.2274	244P	244.2274	88.1777	332.4051	146.4161	478.8212	66.5818	4	-	-	-	-	-	0	4	-
계									1,856	75	173	134	64	44	490	1,366	47

-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청약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인하여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 합과는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는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최하층 우선배정세대(47세대)는 일반분양 총 공급세대(1,856세대)에 포함된 세대수입니다.(최하층이라 함은 각호의 최저층을 말하며 1층 또는 2층이 필로티인 경우 필로티 바로 위층을 최하층으로 함.)
- ※ 상기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당해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공공임대주택 408세대는 동호수 추첨을 통해 우선공급 되었습니다.
- ※ 민간임대주택 2개동 (TOWER A동, B동 / 768세대)은 추후 공급 예정입니다.
- ※ 상기 세대별 대지비율은 주택법 및 관련 법령에 의거 주택형별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입주시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공부정리 결과에 따른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

항을 미치지 않습니다.

- ※ 본 단지는 공동주택 (분양분/ 민간임대/ 공공임대) 의 주거용도와 근린생활시설이 복합적으로 계획되어 있는 대지로, 시설별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시설별 대지지분을 분할하였습니다.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며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 공동주택(분양분/ 민간임대/ 공공임대), 근린생활시설은 동일한 사업부지에 대지경계(구획)가 없는 공유 토지이며, 대지지분을 공유합니다.
- ※ 특별공급 미 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청약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셔야 합니다.[청약접수는 층호별 구분 없이 청약순위별로 접수하여 관계법령 등에 의거하여 호수가 배정됩니다.]
-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나,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거공용공간,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 조경공간, 아파트입면 색채, 단지 내/외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비상차량 동선 등) 등은 실시공시 대관 인.허가 과정이나, 사업주체의 계획변경,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현장여건에 따라 면적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세대의 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 계약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본 표시 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서울시 인·허가 기준에 따른 발코니 변화로 인해, 같은 주택형이라도 발코니 설치 내용 및 서비스 면적이 상이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 원]

주택형	공급 세대수	주택형 (약식표기)	동 (라인)	층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공급금액	1차	2차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계약 시	계약 후 30일 내	2025.03.31	2025.09.29	2026.04.29	2027.07.29	2027.12.29	2028.04.28		
059.8281A	32	59A	103동 5호	2~5F	1	374,300,000	529,700,000	-	904,000,000	50,000,000	40,400,000	90,400,000	90,400,000	90,400,000	90,400,000	90,400,000	90,400,000	271,200,000	
				6~9F	2	382,100,000	540,900,000	-	923,000,000	50,000,000	42,300,000	92,300,000	92,300,000	92,300,000	92,300,000	92,300,000	92,300,000	92,300,000	276,900,000
				10~15F	1	394,100,000	557,900,000	-	952,000,000	50,000,000	45,200,000	95,200,000	95,200,000	95,200,000	95,200,000	95,200,000	95,200,000	95,200,000	285,600,000
				21~29F	2	397,900,000	563,100,000	-	961,000,000	50,000,000	46,100,000	96,100,000	96,100,000	96,100,000	96,100,000	96,100,000	96,100,000	96,100,000	288,300,000
				30~39F	4	399,900,000	566,100,000	-	966,000,000	50,000,000	46,600,000	96,600,000	96,600,000	96,600,000	96,600,000	96,600,000	96,600,000	96,600,000	289,800,000
				40~41F	1	404,100,000	571,900,000	-	976,000,000	50,000,000	47,600,000	97,600,000	97,600,000	97,600,000	97,600,000	97,600,000	97,600,000	97,600,000	292,800,000
			104동 5호	2~5F	2	372,200,000	526,800,000	-	899,000,000	50,000,000	39,900,000	89,900,000	89,900,000	89,900,000	89,900,000	89,900,000	89,900,000	89,900,000	269,700,000
				6~9F	1	380,100,000	537,900,000	-	918,000,000	50,000,000	41,800,000	91,800,000	91,800,000	91,800,000	91,800,000	91,800,000	91,800,000	91,800,000	275,400,000
				16~20F	3	394,100,000	557,900,000	-	952,000,000	50,000,000	45,200,000	95,200,000	95,200,000	95,200,000	95,200,000	95,200,000	95,200,000	95,200,000	285,600,000
				30~39F	3	397,900,000	563,100,000	-	961,000,000	50,000,000	46,100,000	96,100,000	96,100,000	96,100,000	96,100,000	96,100,000	96,100,000	96,100,000	288,300,000
			105동 5호	2~5F	1	378,000,000	535,000,000	-	913,000,000	50,000,000	41,300,000	91,300,000	91,300,000	91,300,000	91,300,000	91,300,000	91,300,000	91,300,000	273,900,000
				10~15F	1	397,900,000	563,100,000	-	961,000,000	50,000,000	46,100,000	96,100,000	96,100,000	96,100,000	96,100,000	96,100,000	96,100,000	96,100,000	288,300,000
				16~20F	1	399,900,000	566,100,000	-	966,000,000	50,000,000	46,600,000	96,600,000	96,600,000	96,600,000	96,600,000	96,600,000	96,600,000	96,600,000	289,800,000
				30~39F	2	404,100,000	571,900,000	-	976,000,000	50,000,000	47,600,000	97,600,000	97,600,000	97,600,000	97,600,000	97,600,000	97,600,000	97,600,000	292,800,000
				40~45F	2	408,200,000	577,800,000	-	986,000,000	50,000,000	48,600,000	98,600,000	98,600,000	98,600,000	98,600,000	98,600,000	98,600,000	98,600,000	295,800,000
			106동 5호	2~5F	1	378,000,000	535,000,000	-	913,000,000	50,000,000	41,300,000	91,300,000	91,300,000	91,300,000	91,300,000	91,300,000	91,300,000	91,300,000	273,900,000
				21~29F	1	402,000,000	569,000,000	-	971,000,000	50,000,000	47,100,000	97,100,000	97,100,000	97,100,000	97,100,000	97,100,000	97,100,000	97,100,000	291,300,000
				30~39F	1	404,100,000	571,900,000	-	976,000,000	50,000,000	47,600,000	97,600,000	97,600,000	97,600,000	97,600,000	97,600,000	97,600,000	97,600,000	292,800,000
				40~45F	1	408,200,000	577,800,000	-	986,000,000	50,000,000	48,600,000	98,600,000	98,600,000	98,600,000	98,600,000	98,600,000	98,600,000	98,600,000	295,800,000
			105동 3호	46F	1	429,700,000	608,300,000	-	1,038,000,000	50,000,000	53,800,000	103,800,000	103,800,000	103,800,000	103,800,000	103,800,000	103,800,000	103,800,000	311,400,000
072.1489A	32	72A	101동 4호	30~39F	2	472,800,000	669,200,000	-	1,142,000,000	50,000,000	64,200,000	114,200,000	114,200,000	114,200,000	114,200,000	114,200,000	114,200,000	342,600,000	
				40~45F	1	477,800,000	676,200,000	-	1,154,000,000	50,000,000	65,400,000	115,400,000	115,400,000	115,400,000	115,400,000	115,400,000	115,400,000	346,200,000	
			101동 8호	2~5F	2	446,700,000	632,300,000	-	1,079,000,000	50,000,000	57,900,000	107,900,000	107,900,000	107,900,000	107,900,000	107,900,000	107,900,000	107,900,000	323,700,000
				21~29F	1	475,300,000	672,700,000	-	1,148,000,000	50,000,000	64,800,000	114,800,000	114,800,000	114,800,000	114,800,000	114,800,000	114,800,000	114,800,000	344,400,000
				30~39F	2	477,800,000	676,200,000	-	1,154,000,000	50,000,000	65,400,000	115,400,000	115,400,000	115,400,000	115,400,000	115,400,000	115,400,000	115,400,000	346,200,000

			104동 3호	43F	1	1,267,150,000	1,793,500,000	179,350,000	3,240,000,000	100,000,000	224,000,000	324,000,000	324,000,000	324,000,000	324,000,000	324,000,000	324,000,000	972,000,000
			105동 2호, 106동 2호	47F	2	1,284,310,000	1,817,900,000	181,790,000	3,284,000,000	100,000,000	228,400,000	328,400,000	328,400,000	328,400,000	328,400,000	328,400,000	328,400,000	985,200,000
			105동 3호, 106동 3호	47F	2	1,273,020,000	1,801,800,000	180,180,000	3,255,000,000	100,000,000	225,500,000	325,500,000	325,500,000	325,500,000	325,500,000	325,500,000	325,500,000	976,500,000
167.3881P	4	167P	101동 1호, 102동 1호	46F	2	1,197,160,000	1,694,400,000	169,440,000	3,061,000,000	100,000,000	206,100,000	306,100,000	306,100,000	306,100,000	306,100,000	306,100,000	306,100,000	918,300,000
			101동 3호, 102동 3호	46F	2	1,208,110,000	1,709,900,000	170,990,000	3,089,000,000	100,000,000	208,900,000	308,900,000	308,900,000	308,900,000	308,900,000	308,900,000	308,900,000	926,700,000
170.1115P	4	170P	101동 2호, 102동 2호	46F	2	1,209,580,000	1,712,200,000	171,220,000	3,093,000,000	100,000,000	209,300,000	309,300,000	309,300,000	309,300,000	309,300,000	309,300,000	309,300,000	927,900,000
			101동 4호, 102동 4호	46F	2	1,237,350,000	1,751,500,000	175,150,000	3,164,000,000	100,000,000	216,400,000	316,400,000	316,400,000	316,400,000	316,400,000	316,400,000	316,400,000	949,200,000
244.2274P	4	244P	101동 1호, 102동 1호	47F	2	1,875,610,000	2,654,900,000	265,490,000	4,796,000,000	200,000,000	279,600,000	479,600,000	479,600,000	479,600,000	479,600,000	479,600,000	479,600,000	1,438,800,000
			101동 2호, 102동 2호	47F	2	1,884,190,000	2,667,100,000	266,710,000	4,818,000,000	200,000,000	281,800,000	481,800,000	481,800,000	481,800,000	481,800,000	481,800,000	481,800,000	1,445,400,000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편집 및 인쇄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모집공고상의 표기이며, 홍보제작물 등에 입주자모집공고문과 상이하게 표현될 수 있으니,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를 위해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유의 사항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향별, 층별 등으로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며,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추가 선택품목(가구, 가전 등 유상옵션)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전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登記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금액 없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법 및 관련 법령에 의거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입주시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가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 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정산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단,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는 상호정산 또는 부대시설면적 조정(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민간임대(아파트), 공공임대(아파트),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 등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기준입니다.(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호수를 적용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하였습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으며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단,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연체료 납부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또는 잔금을 납부일자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 당일 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할인됩니다.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기준으로 이전에 납부한 경우에는 선납할인이 적용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선납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계약자는 분양대금의 총 10% 완납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취급기관의 중도금 대출을 통해 중도금을 납입할 수 있으나, 중도금 대출 관련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중도금 대출의 제한 등), 대출기관의 규제 등으로 인해 대출 알선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계약자는 상기 분양대금(중도금 및 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납부일정에 따라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 알선 불가 및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제1·2금융권 및 기타 대출방식 포함), 대출금리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사유(보증제한, 신용불량 등)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의 대출 알선이 불가하거나 개인별 대출축소·대출불가 등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없으며,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등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잔금은 사용승인일 이후에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 포함)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총 공급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총 공급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별도로 통지하지 않습니다.
-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로서,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택하는 경우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등(초)본을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표등(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 지역 및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7호 규정 및 「주택법」 제48조의2, 동법 시행령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에 의하여 사전방문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 관련 조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금액을 입주자가 잔금 납부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공급계약과 관련한 각종 제세공과금은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는 계약자 부담입니다.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부를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지번(공급 위치), 단지 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와 계획, 조경시설물 등이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원본서류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전산검색결과 당첨 사실, 이중 당첨 및 주택 소유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 및 판매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된 분양 및 판매조건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습니다.. 수분양자는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본 주택에 적용된 단지 명칭,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사업주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단위 : 세대]

구분(약식표기)		59A	72A	74A	74OA	84A	84B	84OA	84OB	84OC	84OD	91A	91OA	91OB	105A	105OA	105OB	112A	112OA	112OB	120A	120OA	120OB	계		
일반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1	-	-	-	5	5	-	1	-	1	-	-	-	-	-	-	-	-	-	-	-	-	-	13	
	장기복무 제대군인	-	-	-	-	5	5	-	1	-	1	-	-	-	-	-	-	-	-	-	-	-	-	-	12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1	-	-	5	5	1	-	1	-	-	-	-	-	-	-	-	-	-	-	-	-	-	13	
	중소기업 근로자	1	-	1	-	5	5	1	-	1	-	-	-	-	-	-	-	-	-	-	-	-	-	-	14	
	장애인	서울특별시	1	1	1	-	4	4	1	1	1	1	-	-	-	-	-	-	-	-	-	-	-	-	-	15
		경기도	-	1	1	-	1	1	-	1	-	1	-	-	-	-	-	-	-	-	-	-	-	-	-	6
		인천광역시	-	-	-	-	1	1	-	-	-	-	-	-	-	-	-	-	-	-	-	-	-	-	-	2
소계	3	3	3	-	26	26	3	4	3	4	-	-	-	-	-	-	-	-	-	-	-	-	-	75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서울특별시(50%)	2	2	2	-	13	13	2	2	2	2	7	1	1	13	2	2	7	1	1	13	2	2	92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50%)	1	1	1	-	13	13	1	2	1	2	6	1	-	13	1	2	6	1	-	13	1	2	81		
신혼부부 특별공급		5	5	5	1	46	46	6	7	6	7	-	-	-	-	-	-	-	-	-	-	-	-	-	134	
생애최초 특별공급		2	2	2	-	23	23	3	3	3	3	-	-	-	-	-	-	-	-	-	-	-	-	-	6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	-	7	7	1	1	1	1	4	-	-	7	1	1	4	-	-	7	1	1	44		
합 계		13	13	13	1	128	128	16	19	16	19	17	2	1	33	4	5	17	2	1	33	4	5	490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국토교통부 공문(주택기금과-1589)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9조에 따라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공통사항)

구분	내용
공급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이력은 배제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 2023.11.1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특별공급 청약에도 소형·저가 주택을 1채 소유한 세대는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당첨 검수일(계약체결 전 서류접수) 또는 계약체결 전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주택전시관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 으로 변경됨.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주택전시관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정보취약계층(노약자, 장애인 등)에 한하여 주택전시관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가급적 인터넷 신청을 권장합니다.

- 인터넷 청약(청약Home)의 경우 서류제출은 필요하지 않으며, 방문접수(주택전시관)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 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공급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 처리된 특별공급주택 및 미계약 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된 특별공급 주택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특별공급 각 유형에서 미달세대 발생 시 타 유형의 특별공급 낙점자(동일한 주택형의 낙점자)에게 우선공급하며, 경쟁 발생 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는 각 주택형별 특별공급 세대수의 500%를 선정하며 각 특별공급 주택형별로 낙점자 중 추첨을 통해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신청자수가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점자 모두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 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2-1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75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추천기관	기관추천 특별공급 유형	추천기관	청약통장 구비여부
	국가유공자	서울북부보훈지청 복지과	청약통장 필요없음
	장애인	서울시청 장애인 자립지원과 /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 인천시청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장기복부 세대군인	서울북부보훈지청 복지과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해당요건을 갖춘자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중소기업 근로자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173세대**

구분	내용
----	----

<p>대상자</p>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다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p> <p>■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p> <p>■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p>																																																																
<p>당첨자 선정방법</p>	<p>■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p> <p>■ ①지역: 해당지역 거주자50%(서울특별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50%[수도권(경기도, 인천광역시)거주자] ※ 서울특별시 거주자가 50% 우선공급에서 낙첨된 자가 기타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거주자 우선공급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p> <p>■ ②배점</p> <table border="1" data-bbox="248 467 2175 1428"> <thead> <tr> <th rowspan="2">배점항목</th> <th rowspan="2">총배점</th> <th colspan="2">배점기준</th> <th rowspan="2">비고</th> </tr> <tr> <th>기준</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계</td> <td>100</td> <td></td> <td></td> <td></td> </tr> <tr> <td rowspan="3">미성년 자녀수(1)</td> <td rowspan="3">40</td> <td>4명 이상</td> <td>40</td> <td rowspan="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td> </tr> <tr> <td>3명</td> <td>35</td> </tr> <tr> <td>2명</td> <td>25</td> </tr> <tr> <td rowspan="3">영유아 자녀수(2)</td> <td rowspan="3">15</td> <td>3명 이상</td> <td>15</td> <td rowspan="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td> </tr> <tr> <td>2명</td> <td>10</td> </tr> <tr> <td>1명</td> <td>5</td> </tr> <tr> <td rowspan="2">세대구성(3)</td> <td rowspan="2">5</td> <td>3세대 이상</td> <td>5</td> <td>-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td> </tr> <tr> <td>한부모 가족</td> <td>5</td> <td>-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td> </tr> <tr> <td rowspan="3">무주택기간(4)</td> <td rowspan="3">20</td> <td>10년 이상</td> <td>20</td> <td rowspan="3">-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td> </tr> <tr> <td>5년 이상 ~ 10년 미만</td> <td>15</td> </tr> <tr> <td>1년 이상 ~ 5년 미만</td> <td>10</td> </tr> <tr> <td rowspan="3">해당 시·도 거주기간(5)</td> <td rowspan="3">15</td> <td>10년 이상</td> <td>15</td> <td rowspan="3">-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td> </tr> <tr> <td>5년 이상 ~ 10년 미만</td> <td>10</td> </tr> <tr> <td>1년 이상 ~ 5년 미만</td> <td>5</td> </tr> <tr> <td>입주자저축가입기간(6)</td> <td>5</td> <td>10년 이상</td> <td>5</td> <td>-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td> </tr> </tbody> </table> <p>※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p>				배점항목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4명 이상	4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3명	35	2명	25	영유아 자녀수(2)	15	3명 이상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명	10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배점항목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4명 이상	4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3명	35																																																														
		2명	25																																																														
영유아 자녀수(2)	15	3명 이상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명	10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2-3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8% 범위 : 134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내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분은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p> <p>■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p>																									
당첨자 선정방법	<p>■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 ①소득구분</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단계</th> <th style="text-align: center;">소득구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단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신생아 우선공급 (15%)</td> <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단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신생아 일반공급 (5%)</td> <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단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우선공급 (35%)</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4단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일반공급 (15%)</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단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추첨공급</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 </tr> </tbody> </table> <p>※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 ※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p> <p>■ ②순위</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순위</th> <th style="text-align: center;">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순위</td> <td>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순위</td> <td>자녀가 없는 분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분</td> </tr> </tbody> </table>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자녀가 없는 분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자녀가 없는 분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분																									

■ ③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

■ 자녀기준

- 자녀는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4.11.15.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004,509원	~8,248,467원	~8,775,071원	~9,563,282원	~10,351,493원	~11,139,704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20% 이하	~8,405,411원	~9,898,160원	~10,530,085원	~11,475,938원	~12,421,792원	~13,367,645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40% 이하	7,004,510원~ 9,806,313원	8,248,468원~ 11,547,854원	8,775,072원~ 12,285,099원	9,563,283원~ 13,388,595원	10,351,494원~ 14,492,090원	11,139,705원~ 15,595,586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8,405,412원~ 11,207,214원	9,898,161원~ 13,197,547원	10,530,086원~ 14,040,114원	11,475,939원~ 15,301,251원	12,421,793원~ 16,562,389원	13,367,646원~ 17,823,526원
추첨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9,806,314원~	11,547,855원~	12,285,100원~	13,388,596원~	14,492,091원~	15,595,587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3)

군복무 중이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청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 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소득을 산정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2-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44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내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
 ■ **②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 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② 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2-5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9% 범위 : 64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내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
 -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 납부 기준

구분 (청약신청자 기준)	소득세납부 기준	
근로자 및 자영업자	① 과거 5개년도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 5년 이상 소득세 납부실적은 청약자 본인이 납부한 경우만 인정하며, 그 배우자 또는 세대원의 납부실적은 인정되지 않음. ※ 해당연도의 소득세 납부 및 1년 기간 동안 12개월 이하로 근무하여 납부한 경우도 1개년의 실적으로 인정함. ※ 청약자 본인은 소득이 없고, 배우자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소득세를 납부한 기한은 인정되지 않음.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자	① 1년 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② 과거 5개년도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소득세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또는 제20조(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

*5개년도 소득세 납부실적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이 포함된 분은 소득금액증명의 총결정세액이 "0"원 초과일 경우 해당년도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함께 제출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4단계	일반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15%)		
5단계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

■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4.11.15.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130% 이하	~9,105,862원	~10,723,007원	~11,407,592원	~12,432,267원	~13,456,941원	~14,481,615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9,105,863원~ 11,207,214원	10,723,008원~ 13,197,547원	11,407,593원~ 14,040,114원	12,432,268원~ 15,301,251원	13,456,942원~ 16,562,389원	14,481,616원~ 17,823,526원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1인 가구	160% 이하	~11,207,214원	~13,197,547원	~14,040,114원	~15,301,251원	~16,562,389원	~17,823,526원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출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3)

군복무 중이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소득을 산정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3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구분	내용
----	----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청약통장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p style="text-align: center;">[청약예금의 예치금액]</p> <table border="1" data-bbox="250 480 2159 710"> <thead> <tr> <th>구 분</th> <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h>그 밖의 광역시</th> <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300만원</td> <td>250만원</td> <td>2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600만원</td> <td>400만원</td> <td>3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1,000만원</td> <td>700만원</td> <td>400만원</td> </tr> <tr> <td>모든면적</td> <td>1,500만원</td> <td>1,000만원</td> <td>500만원</td> </tr> </tbody> </table> <p>※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p>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 ■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table border="1" data-bbox="250 1062 2159 1241"> <thead> <tr> <th>구분</th> <th>가점제</th> <th>추첨제</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60㎡ 이하</td> <td rowspan="2">40%</td> <td rowspan="2">60%</td> </tr> <tr> <td>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td> </tr> <tr> <td>전용면적 85㎡ 초과</td> <td>-</td> <td>100%</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table border="1" data-bbox="250 1289 2159 1517"> <thead> <tr> <th>가점항목</th> <th>가점상한</th> <th>가점구분</th> <th>점수</th> <th>가점구분</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5">①무주택기간</td> <td rowspan="5">32</td> <td>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td> <td>0</td> <td>8년 이상 ~ 9년 미만</td> <td>18</td> </tr> <tr> <td>1년 미만</td> <td>2</td> <td>9년 이상 ~ 10년 미만</td> <td>20</td> </tr> <tr> <td>1년 이상 ~ 2년 미만</td> <td>4</td> <td>10년 이상 ~ 11년 미만</td> <td>22</td> </tr> <tr> <td>2년 이상 ~ 3년 미만</td> <td>6</td> <td>11년 이상 ~ 12년 미만</td> <td>24</td> </tr> <tr> <td>3년 이상 ~ 4년 미만</td> <td>8</td> <td>12년 이상 ~ 13년 미만</td> <td>26</td> </tr> </tbody> </table>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이하	40%	60%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전용면적 85㎡ 초과	-	100%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이하	40%	60%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전용면적 85㎡ 초과	-	100%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본인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 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

	<p>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p> <p>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p> <p>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p> <p>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p> <p>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p> <p>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p>
--	---

<p>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p>	<p>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p> <p>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p>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p>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p>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출입국사실증명서
------------------------------	--

<p>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p>	<p>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p> <p>*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p>
---------------------------	--

<p>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p>	<p>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p>
-----------------------------------	---

■ ② 무주택자 우선공급 :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단계	비율	내용
----	----	----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p>■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p> <p>-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p> <p>*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p>		
비고	<p>■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p> <p>-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p> <p>-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p>		

3-1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p>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p> <p>2.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처리일</p> <p>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p> <p>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p> <p>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p> <p>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p> <p>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p> <p>*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p>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p>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p> <p>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p> <p>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p> <p>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p> <p>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p> <p>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p> <p>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p> <p>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p> <p>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p> <p>-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p>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를 소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

-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함. 이하 같습니다.)이 비수도권 1억원(수도권 1억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한 경우 '소형·저가주택등' 보유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 (현재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한 경우
- (현재 무주택자) : 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릅니다.
 - ③ '분양권 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 2023.11.1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소형·저가주택등'에 관한 특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신청 시 모두 인정됩니다.

4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은행) 시 필요서류**

필요서류				
본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table border="1"> <thead> <tr> <th>인감증명 방식</th> <th>본인서명확인 방식</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r> </tbody> </table>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공고단지 청약연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를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당첨자발표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4.12.04.(수) ~ 2024.12.13.(금)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현장접수자의 경우 인증서 로그인 없이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만으로 당첨내역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PC·모바일 신청자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일시 : 2024.12.04.(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확인 서류 제출

□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 제출 일정 및 장소

구분		서류 제출 대상자	서류 제출 일정	서류 제출 장소
정당 당첨자	특별공급	당첨자 전원	24.12.05.(목) ~ 24.12.13.(금) 10:00 ~ 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 견본주택 -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들로1길 45 - 구비서류 등 지참 방문
	일반공급			
예비 입주자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서류접수 대상은 별도 통보 예정	예비입주자 서류접수 일정/방식 등 은 별도 통보 예정	
	일반공급			

※ 당첨자에 한해 제출 서류를 접수하며,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 계약체결 이전 사전 서류제출기간 내에 아래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해당 거주기간, 주택 소유, 배우자분리세대 등 확인)
- 서류제출 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일정, 계약체결 일정은 추후 당사 분양 홈페이지(<https://www.seoulone-ipark.co.kr/>) 를 통해 안내 예정이며, 홈페이지를 통해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정당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는 서류제출 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필히 제출 해야합니다.(단,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절차로 계약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도 접수 불가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은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으로, 인터넷 신청 청약자에 한하여 상기 제 증명서류는 계약체결 전 서류제출 기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소명자료 제출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당첨자(특별공급, 일반공급) 및 예비입주자는 지정된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내에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신청내역 등 적격 자격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부적격 통보를 받거나 부적격 의심 사유가 있어 소명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소명기간 내(계약 체결 이전) 제출하여야 합니다.(자격검증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계약 진행 불가합니다.)
- 소명자료 제출과 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예정으로 청약신청자가 청약신청 시 잘못된 정보 기재(연락처, 주소 등)로 해당 정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적격 통보를 받거나 부적격 의심 사유가 있어 소명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소명에 필요한 서류를 소명기간 내 (계약 체결 이전)에 반드시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 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 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동호를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고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동·호수를 배정받은 예비입주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동·호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로 선정된 자는 연락처 변경 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자격확인 제출 서류(예비입주자 포함)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기본서류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전 발급분에 한함) ※외국국적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주택공급신청자와의 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90 일 초과 해외체류 여부 확인 ※ 발급기간 : 주택공급신청자의 출생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전 출입국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추가 제출 (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청약자 및 세대원 등 모두)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복무확인서	본인	•10년이상/25년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 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군복무 기간 명시)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직인날인) 및 재직증명서(직인날인) •해외취업자및사업체운영자인경우→현지관공서에서발급받은사업또는근로관련서류,취업또는사업비자발급내역등 •근로자가아닌경우→①비자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①, ② 모두 반드시 제출) ※ 유학, 연수(근로 및 파견 목적 제외),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해외에서발급받은서류의경우번역공증첨부필수임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세대원	•세대원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자녀 전원의 해외체류 유무 확인 ※발급기간:제출대상자의출생일로부터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지정하여발급(개명한경우,개명한시점에따라개명전출입국사실을추가제출할수있음)

기관추천 특별공급	○		특별공급 대상 증명서류	본인	•해당 추천 기관장이 사업주체에게 통보한 추천명부로 접수함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만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직계비속	•만 18세인 직계비속을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3세대구성 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상 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주소변동내역 표시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 가족으로 지정된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또는 3세대 구성 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된 경우 ※ 청약자(본인)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의료법에 의한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증명서류 [임신진단서 이외 불가]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증명서(상세)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또는 배우자	•자녀가 입양의 경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신혼부부 특별공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 19 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과거자력변동사항이전부표기되어야하며,성명,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표시로발급
	○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입증서류' 참조] (또한,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포함)
		○	부동산 소유현황 및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본인 및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자산입증서류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조] -소득기준은초과하나,부동산가액기준을충족하는조건으로신청한자는주택공급신청자와세대원전원의서류를모두제출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청약자(본인)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피부양 직계비속	•혼인신고일 전 출산한 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청약자(본인)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의료법에 의한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증명서류 [임신진단서 이외 불가]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 야 함)
		○	입양관계증명서(상세)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또는 배우자	•자녀가 입양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피부양 직계존속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주민등록표초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공급신청자(세대주이어야 함)와 피부양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 여부 확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30세 이상의 미혼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18 세 이상의 미혼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생애최초 특별공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 19 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과거자격변동사항이전부표기되어야하며,성명,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표시로발급
	○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공급신청자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통산하여 5 개년도 이상의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 참조]
	○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증빙서류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또한,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증빙서류 포함) ※전년도 소득이 없고, 현재 근로자가 아닌 경우 → 전년도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부동산 소유현황 및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자산입증서류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조] -소득기준은초과하나,부동산가액기준을충족하는조건으로신청한자는주택공급신청자와세대원전원의서류를모두제출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자(본인)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신의 경우 의료법에 의한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증명서류 [임신진단서 이외 불가]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증명서(상세)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녀가 입양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일반공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없거나 그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계존속을 3 년이상 부양하여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피부양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30세 이상의 미혼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18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	당첨사실 확인서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피부양 직계존·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점제 당첨자는 필수 제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직계존속부양가족제외사항: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발급기간:직계존·비속의출생일로부터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지정하여발급(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전 출입국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부적격 통보 받은자	○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여부 증명서류	해당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 주택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 주택 :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한 무허가 건물임을 확인하는 공문 •폐가, 멸실 주택 :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증명원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	전세피해자 확인서류	본인 또는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세피해자 낙찰주택 소유기간(보증금의 일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그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낙찰받아 소유한 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한 경우 ※ 단, 낙찰 주택이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주택공시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① 임대차계약서 : 해당 임차주택, 사본 제출 ② 낙찰 증빙서류 : 매각허가결정서 또는 매각결정통지서 사본 ③ 등기사항증명서 : 해당 임차주택, 원본 제출 ④ 채권자 확인서류(낙찰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할 경우 : 경매 낙찰시(배당표, 배당요구신청서 등의 사본) / 공매 낙찰시(배분계산서 등의 사본)
	○	당첨사실 소명 서류	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제3자 대리인신청 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용도 : 아파트 서류접수 위임용)
	○	신분증	대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1.15.)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 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여부,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등을 위해 모두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서류발급 시 필히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직장에서 발급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직인 날인 필요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상기 당첨자격 입증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산정방식은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동일함)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	-----------	-----

근로자	일반근로자	㉠ 재직증명서(출산휴가 및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출산휴가,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또는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 계속 휴직으로 월평균소득 산정이 어려운 경우 휴직 전 정상 재직기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 출산휴가 기간 중 고용보험을 수령한 경우 출산전후 급여신청서(확인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해당직장 ㉡ 세무서, 해당직장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 재직증명서 ㉡ 금년도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발급되지 않을 경우 전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본인의 근로(연봉)계약서를 제출받아 월평균 소득을 추정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 재직증명서 ㉡ 전년도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 해당직장
	직장가입자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안되는 경우	㉠ 재직증명서(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해당직장 ㉡ 세무서
자영업자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세무서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공고일 이전 가입) 또는 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분)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민연금공단/세무서 ㉡ 세무서
	법인대표자	㉠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직인 날인) 및 재직증명서(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전년도 재무재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세무서/해당직장 ㉡ 해당직장 ㉢ 세무서
프리랜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등)	계속적인 프리랜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해촉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	- 세무서 - 해당직장
	신규 프리랜서	㉠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 해당기간의 해촉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	계속적인 근로자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해당직장 - 세무서
	신규 근로자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또는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공급신청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면 해당 세대 전체가 기준소득 이하인 것으로 간주	- 행정복지센터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각서-건본주택에 비치 ㉡ 사실증명서 (신고사실 없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하고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건본주택 비치 ㉡ 세무서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1.15.)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2의 3.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 상기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음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중 결정세액이 환급 또는 없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해당년도 모두)해야 함

※ 해당 직장, 세무서 등 해당 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소득세 납부 입증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서류구분	해당자격	제출서류	발급처
자격입증 기본서류	근로자	㉠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① 해당직장 및 세무서 ② 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자로서 과거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자	㉠ 납세증명서 및 납부내역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 원본 및 위촉(재직)증명서 (과거 1년 이내 및 해당년도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5개년도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근로자,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5개년도 각각의 증빙서류 필요) ㉠ 소득금액증명, 납세증명서 및 납부내역증명(종합소득세 신고자에 한함)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 세무서 ㉣ 해당직장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1.15.)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2의 3.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 상기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중 결정세액이 환급 또는 없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해당년도 모두)해야 합니다.
 ※ 해당 직장, 세무서 등 해당 기관의 날이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소득세납부 입증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해당자격	자산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부동산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필수	㉠ 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 소유 현황에 표시되니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전국구)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행정복지센터 및 정부24
	추가 (해당자)	㉣ 공동(개별)주택공시가격 확인원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 개별공시지가확인원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오피스텔 등)인 경우) ㉦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오피스텔 등)인 경우] (서울시 : 'ETAX 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건축물시가표준액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서울시 외 :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조회'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부동산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필수	㉠ 부동산소유현황(세대원별 각각 발급)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 본인 및 청약자 공동/금융인증서 지참 (※건본주택에서 청약자 및 세대원 전원 조회내역 확인)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재산세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을 증빙)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행정복지센터 또는 위택스 발급(전국구)

※ **자산보유기준**(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 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3조에 의거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과 그 주택의 부속토지"는 자산보유기준 적용대상이 됨															
• 부동산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 지분가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봄. 다만, 세대원간에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 세대원간의 지분 합계액을 소유한 것으로 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	---

6 계약 체결 및 유의사항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계좌(계약금)로 계약금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모든 당첨자는 계약전에 당첨자격 서류검수를 완료하여야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구 분	계약 기간	계약 장소	문의 전화
정당 당첨자 계약 체결	24.12.16(월) ~ 24.12.19(목), 4일간 (10:00~17:00)	'서울원 아이파크' 견본주택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들로1길 45)	02-568-3032

- ※ 공급계약 체결 방법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일정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한 공지사항은 추후 '서울원 아이파크' 홈페이지(<https://seoulone-ipark.co.kr/>)를 통해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주체가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 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합니다.
- ※ 순위내 청약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공급합니다.
- ※ 아래 "계약 체결시 구비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시 구비사항

구 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확인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 시	○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본인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현장수납 불가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전 발급분에 한함)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발급용 (발급용도 : 주택공급계약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신청 불가
	○		인감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
		○	당첨 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해당자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해당자	•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여부 증명서류 - 일반 주택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 - 무허가 주택 :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한 무허가 건물임을 확인하는 공문 •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본인	• 부동산거래신고 6억 이상의 경우(홈페이지 서식 게시)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인지세 납부)		• 공급계약에 따른 인지세와 발코니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계약에 따른 인지세 별도 납부 ※ 전자수입인지(종이문서용) 구매 방법 및 금액 - 우체국, 은행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에 접속, 구매 및 출력 - 계약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2만원,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4만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10억원 초과 : 35만원	
대리인 계약 시 (본인 이외)	○		위임장	-	• [건본주택에 비치]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용도 : 주택공급계약 위임용 (본인 발급용)
	○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여권(2020.12.21. 이전 발급분에 한함)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1.15)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시 계약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 제3자대리 계약(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검수가 완료되지 않은 분은 당첨자 자격확인이 완료된 후 상기 계약 시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납부 안내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제 3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대상이 되며, 공급계약 체결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인지세법」제1조 제2항에 의거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사업주체와 계약자는 연대하여 균등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정부수입인지(종이문서용전자수입인지)형태로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분양계약자가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 인지 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계약에 따른 인지세와 발코니확장 계약에 따른 인지세는 별도 납부대상이나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질거래가격(공급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항 납부지연가산세의 내용에 따라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의 문서 중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대한 납부지연 가산세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부를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법」 제1조,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8조에 따른 인지세 납부방법

인지세 납부 안내

대상 증서	공급계약서 및 전매계약서(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서(도급 증서)					
납부 기한	계약체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 [전매] 명의변경 승인일					
납부 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 접속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 및 결제 → 전자수입인지 출력하여 과세문서(공급계약서 등)에 첨부 우체국 및 은행에 방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하여 과세문서(공급계약서 등)에 첨부 					
납부 금액	구분	계약서 기재금액	총 납부 세액	계약자 부담 금액	비고	
	아파트 분양 계약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0,000원	75,000원		해당 세대
		10억 초과	350,000원	175,000원		
	추가선택품목계약 (발코니확장공사및유상옵션포함)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20,000원	10,000원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40,000원	20,000원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0,000원	35,000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0,000원	75,000원		
10억 초과		350,000원	175,000원			

※ 수입인지 구매 관련 자세한 내용은 금융결제원 ☎1577-5500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양대금 납부 계좌 및 납부 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KB국민은행	955501-00-004053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 ※ 분양대금 중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약금 계좌로 계약 동·호수와 계약자명을 기재하고 입금하여야 하며, 입금증은 계약 시 건본주택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본주택 현금 수납 불가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201호 계약자 → '1011201홍길동')
- ※ 계약금 납부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 **분양대금 중 계약금은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분양대금 중 중도금, 잔금은 약정된 납부일에 상기 납부계좌와 연동되는 가상계좌(공급계약체결 시 부여됨)로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 분양대금의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 ※ **상기 계좌는 공급대금 관리계좌(모계좌)로서 중도금, 잔금은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에서 상기 계좌로 이체되어 관리되며, 세대별로 계좌번호가 상이하므로 입금시 유의 바랍니다.**
- ※ 상기 계좌 및 공급계약 체결 시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금액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선납 시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보증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발생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분양대금 납부계좌는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계약 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당첨자 계약 체결기간 준수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며 현상수납은 불가)
 - 지정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이중 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 처리 및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4호

-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료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7일)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취소 확인 : 주택당첨자는 계약체결 후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① 청약가점항목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 ②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 ③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단,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시, 청약신청자 배우자의 혼인 전 청약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제한사항은 예외)
 - ④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가 아닌 자가 가점제를 적용받아 당첨된 경우
 - ⑤ 위장전입,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 ⑥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당사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계좌부활 요청서(당사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며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본 아파트의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분리세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당첨자는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 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부적격자로 판명됨으로 인한 청약통장 사용불가 등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 등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 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또한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견본주택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본 공동주택은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 사항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주)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공급계약 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중도금 대출취급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당사에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변심, 귀책사유 등으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공급계약서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시 계약자가 선택하는 마감재 선택사항 및 추가옵션계약은 변경이 불가하며, 공사에 착수하거나 별도품목 상품을 제작업체에 주문 또는 발주한 이후에는 해제가 불가하므로 이점 유념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비규제지역인 서울시 노원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6억원 이상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필수 안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에 따라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아파트 대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4항에 따라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에 부동산등기용 개별번호발급을 마치고 국내 부동산을 취득 및 신고하여야 합니다.
 - 영리목적 외국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 거소 요건에 따라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승인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를 근거로 공급계약의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주택건설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시행변경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에 통보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 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제5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 이하 이 항에서 같음)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제출한 자격확인 서류 검토 결과, 가점점수가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한 경우에만 예비입주자 자격이 유지될 수 있으며,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 점수보다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계약자 중도금대출 안내

- 분양사무소 및 건본주택은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시 대출 가능 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며, 추후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개별 심사를 통해 대출 여부가 결정되므로 계약자는 본인의 대출불가 또는 대출축소 사항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 이자 후불제 조건으로 전체 공급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용자알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단, 정부정책 및 금융권 사정 등의 사유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 이자 납부는 대출개시일부터 입주개시일의 이자납입일까지 발생한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대납하고 이후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단, 사업주체가 대납한 이자는 계약자가 사업주체에게 잔금납부 시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건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대출취급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 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 본인이 직접 공급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은 계약일 이후 사업주체, 시공사와 협의 후 별도 지정됩니다.
-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합니다.
- 중도금 대출약정 기간은 중도금 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와 대출취급기관이 별도 협약한 대출 만기일까지이며,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입주개시일의 이자납입일까지 **이자후불제**로 사업주체가 대납하고, 이후부터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공급계약이 계약자의 사정이나 귀책사유로 인해 해제가 될 경우 계약자는 위약금과 별도로 사업주체가 우선 납부한 중도금 대출이자 전액을 사업주체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 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으로 대출이 불가할 경우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총 분양대금의 10% 완납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취급 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 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정부 정책, 대출 취급 기관, 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대출 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 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의 책임은 없습니다.
- 관계법령에 의거 개인의 주택 소유, 대출 유무, 분양권 소유 여부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개인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기관을 알선할 뿐 개별 고객의 대출 비율 축소 및 대출 불가에 대하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및 법인은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자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납부 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하여야 합니다. 또한 분양대금 미납부 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 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 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 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 중단 등 계약에 따라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출 취급 기관과의 중도금 대출 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적격 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 기관의 중도금 대출 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시장의 정책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 취급 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 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당사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 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 취급 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대출로 전환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 취급 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입주개시일의 이자납입일까지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대신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대출금유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납부하는 경우, 이자후불제 조건과 관련하여 중도금 대출금 이자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정하는 입주지정 개시월의 이자납입일(입주지정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 등 변경된 입주지정 개시월의 이자납입일 기준)까지는 사업주체가 선납부(대납)하고(단, 사업주체가 지정한 중도금 대출기관의 중도금 대출이자만 해당하며, 관련정책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 비율을 제한받아 계약자가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한 중도금에 대한 대출이자는 해당하지 않음), 입주지정 개시월의 이자납입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입주예정자(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중도금 대출 최초 신청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제시한 중도금 대출금리 등의 조건으로 대출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후 중도금 대출금리 조건(대출금리 인상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분양권 전매는 계약자가 사업주체에 대한 채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 한하며, 분양권 양수인은 계약자의 본 공급계약 과정에 체결한 약정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또한 전매로 인하여 발생 될 수 있는 민형사상, 세무상 기타 제반 법적문제에 대하여 계약자 및 분양권 양수인이 책임집니다. (전매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및 관계법령의 제, 개정에 의해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분양권 전매 전까지 채무관계(미납대금, 연체료 등)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목적물에 가압류, 압류, 추심명령 등 제한채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이를 해제 또는 소멸시켜야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위 표시 부동산을 대상으로 대출받은 자는 전매 시 해당 대출취급기관이 발행한 전매 당사자간의 대출승계 증거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러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한 후 상환영수증을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매자간 작성(합의)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상 분양권 전매 금액이 최초 체결한 분양계약 상의 분양대금과 상이하더라도,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는 무관하며 양도인 및 양수인이 책임집니다.
- 계약자 또는 분양권 양수인이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일 경우에 계약을 하거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법규에 따른 신고 등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해태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불법청약 등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당 분양계약이 취소되더라도 분양권 매수자는 이에 따른 피해를 보호받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7호 규정 및 「주택법」 제48조의2 「주택법시행규칙」 제20조의2에 의거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 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입주자 사전방문 일정은 관련 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일 : 2028년 7월 예정(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및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와 관계없는 문화재 출토, 매립폐기물, 암반발견, 행정명령, 민원, 법원의 공사중지 결정,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전염병 발생, 사회재난 등과 같은 예기치 못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승인이 지연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이를 계약자에게 통보키로 하며, 이 경우에는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 지급을 적용하지 않으며 입주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가 계약한 동·호수에 대하여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는 잔금납부, 열쇠인수, 이사 또는 소유권 이전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납부불이행으로 사업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계약자가 이를 배상함. 단, 입주지정기간내에는 열쇠인수일을 기준으로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를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이내에 잔여 중도금 및 잔금, 연체료를 완납하고,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제반서류 및 비용(중도금대출 상환 영수증 또는 중도금대출에서 담보대출로 전환되는 은행 확인 서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비용, 선수관리비 납부영수증 등)을 사업주체에게 제출 또는 납부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합니다.
- 입주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탁관리업체에서 선수관리비를 부과합니다.
- 사업주체와 시공사는 수분양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채권회수를 위하여 입주관리(분양대금, 보증부대출금 등 채무 미완제시 입주 및 소유권등기의 거부, 채무변제의 독촉, 가압류 등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적절한 조치를 위한 통지 등을 말함)를 이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민원을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 경비실,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독서실, 돌봄센터, 피트니스, 코인세탁실, 실내골프연습장, 키즈라운지 등

■ 하자의 범위 및 담보책임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다.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계약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도로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며 납부금액 및 시기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정확한 일자 는 추후 통보합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 비용

(단위 : 원 / VAT포함)

주택형 구분 [약식표기 (타입)]	발코니 확장 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지정일
59A	13,200,000	1,320,000	11,880,000
72A	11,500,000	1,150,000	10,350,000
72OA	11,500,000	1,150,000	10,350,000
72OB	11,500,000	1,150,000	10,350,000
74A	13,900,000	1,390,000	12,510,000
74OA	13,900,000	1,390,000	12,510,000
74OB	13,900,000	1,390,000	12,510,000
84A	16,700,000	1,670,000	15,030,000
84OA	16,700,000	1,670,000	15,030,000
84OB	16,700,000	1,670,000	15,030,000
84B	15,800,000	1,580,000	14,220,000
84OC	15,800,000	1,580,000	14,220,000
84OD	15,800,000	1,580,000	14,220,000
91A	17,100,000	1,710,000	15,390,000
91OA	17,100,000	1,710,000	15,390,000
91OB	17,100,000	1,710,000	15,390,000
105A	20,300,000	2,030,000	18,270,000
105OA	20,300,000	2,030,000	18,270,000
105OB	20,300,000	2,030,000	18,270,000
112A	19,800,000	1,980,000	17,820,000
112OA	19,800,000	1,980,000	17,820,000
112OB	19,800,000	1,980,000	17,820,000
120A	17,600,000	1,760,000	15,840,000
120OA	17,600,000	1,760,000	15,840,000
120OB	17,600,000	1,760,000	15,840,000
143P	32,900,000	3,290,000	29,610,000
145P	36,600,000	3,660,000	32,940,000
159P	33,900,000	3,390,000	30,510,000
161P	30,200,000	3,020,000	27,180,000
167P	33,300,000	3,330,000	29,970,000
170P	30,700,000	3,070,000	27,630,000
244P	55,800,000	5,580,000	50,220,000

▣ 발코니 확장시 유의사항

- 발코니 확장 공사에는 외부창호, 확장부위 마감공사 비용 등이 포함되며, 타입별 확장 부위는 건본주택, 카달로그 등 안내자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발코니 입면 변화 및 창호 크기 및 위치 등의 차이로 서비스 면적과 채광 및 환기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 이상의 다른 제품(타사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카달로그 및 건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홍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수전 및 드레인, 선홍통의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가 설치되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지할 수 없으며, 인접 상·하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 습관에 따라 발코니 창호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

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겨울철 실내 습도가 높고 환기가 부족한 경우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되기 쉬우며, 각 세대에 설치된 환기시설을 주기적으로 적극 활용하여 환기 시 결로 발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통합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통합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창호 사양 및 크기, 창호분할 규격 및 입면 디자인, 개폐방식, 개폐방향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실외기실(하향식피난구 설치) 등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은 훼손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확장부분의 외부 창호는 창호사양(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미확장부분(예 : 안방발코니 창)은 단창으로 설치됩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창호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실시공시 인·허가 협의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시 구조체 및 인테리어,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시 외관구성상 일부세대의 발코니에 장식물이 부착되거나 선홈통을 가리기 위한 벽체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범위는 세대별로 상이하며 자세한 가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으로 수입인지(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2만원)를 계약서 작성시점에 계약서에 첨부해야 하며, 해당 수입인지는 소유권 이전등기 시 필수 제출 서류로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합니다.
- 서울시 심의 기준에 따라 101,2동 4,5,6,7호 라인, 103,4,5,6동 1,2,3,4호 라인 20층 이하 일부 타입에는 오픈발코니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 오픈발코니 적용에 따라 전용면적이 같은 타입이라도 발코니의 형태 및 면적이 상이할수 있으며, 오픈발코니는 확장이 불가합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는 분양대금 및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추후 별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수표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홍길동 → '10110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 '1010201홍길동'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점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

- 평면선택 및 추가선택품목(현관중문, 벽/바닥 마감재, 주방 스타일링 특화, 평면옵션 및 수납특화옵션 등)은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과 고객 간 계약 및 설치가 진행되며, 세부사항(계약일정, 납부일정, 납부계좌 등)은 견본주택에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단종, 제조회사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발에 따라 동일회사의 동종,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미설치된 타입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의 디자인이 적용되며, 옵션의 형태 및 사이즈는 타입별로 상이하니 자세한 내용은 카달로그 등 안내자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 내 기본형(무상) 내용은 발코니 확장 기준 안내입니다.

1) 유상옵션(대분류)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단위:원, VAT포함)

주택형 구분 [약식표기 (타입)]	구분		제조사	판 매 가	비 고	
59A	GRILL TYPE	전체	3대	거실+안방+침실1	5,220,000	일반형
		기본	2대	거실+안방	3,750,000	
	공기청정 GRILL TYPE	전체	3대	거실+안방+침실1	6,430,000	
		기본	2대	거실+안방	4,560,000	
72A/72OA/72OB	GRILL TYPE	전체	3대	거실+안방+침실1	5,240,000	
		기본	2대	거실+안방	3,780,000	
	공기청정 GRILL TYPE	전체	3대	거실+안방+침실1	6,450,000	
		기본	2대	거실+안방	4,580,000	

74A/74OA/74OB	GRILL TYPE	전체	3대	거실+안방+침실1	5,240,000
		기본	2대	거실+안방	3,780,000
	공기청정 GRILL TYPE	전체	3대	거실+안방+침실1	6,450,000
		기본	2대	거실+안방	4,580,000
84A/84OA/84OB	GRILL TYPE	전체	5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8,200,000
		기본	3대	거실+주방+안방	4,960,000
	공기청정 GRILL TYPE	전체	5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10,220,000
		기본	3대	거실+주방+안방	6,170,000
84B/84OC/84OD	GRILL TYPE	전체	5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8,200,000
		기본	3대	거실+주방+안방	4,960,000
	공기청정 GRILL TYPE	전체	5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10,220,000
		기본	3대	거실+주방+안방	6,170,000
91A/91OA/91OB	GRILL TYPE	전체	5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8,220,000
		기본	3대	거실+주방+안방	5,160,000
	공기청정 GRILL TYPE	전체	5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10,240,000
		기본	3대	거실+주방+안방	6,370,000
105A/105OA/ 105OB	GRILL TYPE	전체	6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침실3	9,580,000
		기본	3대	거실+주방+안방	5,240,000
	공기청정 GRILL TYPE	전체	6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침실3	12,000,000
		기본	3대	거실+주방+안방	6,440,000
112A/112OA/ 112OB	GRILL TYPE	전체	6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침실3	9,910,000
		기본	3대	거실+주방+안방	5,730,000
	공기청정 GRILL TYPE	전체	6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침실3	12,330,000
		기본	3대	거실+주방+안방	6,940,000
120A/120OA/ 120OB	GRILL TYPE	전체	6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침실3	9,920,000
		기본	3대	거실+주방+안방	5,730,000
	공기청정 GRILL TYPE	전체	6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침실3	12,340,000
		기본	3대	거실+주방+안방	6,940,000
143P	GRILL TYPE	전체	6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서재	11,170,000
		기본	3대	거실+주방+안방	5,750,000
	공기청정 GRILL TYPE	전체	6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서재	13,590,000
		기본	3대	거실+주방+안방	6,960,000
145P	GRILL TYPE	전체	6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서재	11,170,000
		기본	3대	거실+주방+안방	5,750,000
	공기청정 GRILL TYPE	전체	6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서재	13,590,000
		기본	3대	거실+주방+안방	7,080,000
159P	GRILL TYPE	전체	6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서재	11,180,000
		기본	3대	거실+주방+안방	5,760,000
	공기청정 GRILL TYPE	전체	6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서재	13,600,000
		기본	3대	거실+주방+안방	6,970,000
161P	GRILL TYPE	전체	6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서재	11,180,000

		기본	3대	거실+주방+안방		5,760,000	
	공기청정 GRILL TYPE	전체	6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서재		13,600,000	
		기본	3대	거실+주방+안방		6,970,000	
167P	GRILL TYPE	전체	6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침실3		11,570,000	
		기본	3대	거실+주방+안방		6,220,000	
	공기청정 GRILL TYPE	전체	6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침실3		13,920,000	
		기본	3대	거실+주방+안방		7,430,000	
170P	GRILL TYPE	전체	6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침실3		11,570,000	
		기본	3대	거실+주방+안방		6,220,000	
	공기청정 GRILL TYPE	전체	6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침실3		13,920,000	
		기본	3대	거실+주방+안방		7,430,000	
224P	GRILL TYPE	전체	6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침실3		16,400,000	
		기본	3대	거실+주방+안방		7,450,000	
	공기청정 GRILL TYPE	전체	6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침실3		19,620,000	
		기본	3대	거실+주방+안방		9,060,000	
59A	GRILL TYPE	전체	3대	거실+안방+침실1		6,210,000	
		기본	2대	거실+안방		4,440,000	
	공기청정 GRILL TYPE	전체	3대	거실+안방+침실1		7,510,000	
		기본	2대	거실+안방		5,310,000	
72A/72OA/72OB	GRILL TYPE	전체	3대	거실+안방+침실1		6,370,000	
		기본	2대	거실+안방		4,610,000	
	공기청정 GRILL TYPE	전체	3대	거실+안방+침실1		7,680,000	
		기본	2대	거실+안방		5,470,000	
74A/74OA/74OB	GRILL TYPE	전체	3대	거실+안방+침실1		6,370,000	
		기본	2대	거실+안방		4,610,000	
	공기청정 GRILL TYPE	전체	3대	거실+안방+침실1		7,680,000	
		기본	2대	거실+안방		5,470,000	
84A/84OA/84OB	GRILL TYPE	전체	5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9,790,000	
		기본	3대	거실+주방+안방		5,980,000	
	공기청정 GRILL TYPE	전체	5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11,960,000	
		기본	3대	거실+주방+안방		7,280,000	
84B/84OC/84OD	GRILL TYPE	전체	5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9,790,000	
		기본	3대	거실+주방+안방		5,980,000	
	공기청정 GRILL TYPE	전체	5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11,960,000	
		기본	3대	거실+주방+안방		7,280,000	
91A/91OA/91OB	GRILL TYPE	전체	5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9,940,000	
		기본	3대	거실+주방+안방		6,290,000	
	공기청정 GRILL TYPE	전체	5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12,100,000	
		기본	3대	거실+주방+안방		7,590,000	
105A/105OA/ 105OB	GRILL TYPE	전체	6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침실3		11,540,000	

삼성/LG

고급형

	공기청정 GRILL TYPE	기본	3대	거실+주방+안방	6,340,000
		전체	6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침실3	14,150,000
		기본	3대	거실+주방+안방	7,640,000
112A/112OA/ 112OB	GRILL TYPE	전체	6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침실3	11,880,000
		기본	3대	거실+주방+안방	6,840,000
	공기청정 GRILL TYPE	전체	6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침실3	14,490,000
120A/120OA/ 120OB	GRILL TYPE	기본	3대	거실+주방+안방	8,150,000
		전체	6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침실3	14,520,000
	공기청정 GRILL TYPE	기본	3대	거실+주방+안방	8,150,000
143P	GRILL TYPE	전체	6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서재	13,490,000
		기본	3대	거실+주방+안방	6,960,000
	공기청정 GRILL TYPE	전체	6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서재	16,090,000
145P	GRILL TYPE	기본	3대	거실+주방+안방	8,260,000
		전체	6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서재	13,490,000
	공기청정 GRILL TYPE	전체	6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서재	16,090,000
159P	GRILL TYPE	기본	3대	거실+주방+안방	8,260,000
		전체	6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서재	13,490,000
	공기청정 GRILL TYPE	전체	6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서재	16,090,000
161P	GRILL TYPE	기본	3대	거실+주방+안방	8,260,000
		전체	6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서재	13,490,000
	공기청정 GRILL TYPE	전체	6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서재	16,090,000
167P	GRILL TYPE	기본	3대	거실+주방+안방	8,260,000
		전체	6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침실3	13,860,000
	공기청정 GRILL TYPE	전체	6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침실3	16,390,000
170P	GRILL TYPE	기본	3대	거실+주방+안방	8,770,000
		전체	6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침실3	13,860,000
	공기청정 GRILL TYPE	전체	6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침실3	16,390,000
224P	GRILL TYPE	기본	3대	거실+주방+안방	8,770,000
		전체	6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침실3	19,490,000
	공기청정 GRILL TYPE	전체	6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침실3	22,960,000
		기본	3대	거실+주방+안방	9,030,000
		전체	6대	거실+주방+안방	10,760,000

▶ 빌트인 가전 제품

(단위:원, VAT포함)

상품명	주택형 구분 [약식표기 (타입)]	세부사항	제조사	판매가
-----	-----------------------	------	-----	-----

빌트인 냉장고	전 주택형	BC4S1AA1+BC3K1AA1	LG	5,700,000
		S715SI24B	LG	6,400,000
		S695SI34B	LG	7,650,000
		BRS685030SR	삼성	5,500,000
		BRS665130SR	삼성	7,300,000
		RR40C7995AP+RZ34C7965AP+RQ34C7945AP	삼성	5,400,000
빌트인 김치냉장고		K221PR14BL2/BR2	LG	1,300,000
		RQ22K5(L/R)01EC	삼성	1,300,000
식기세척기		DIE6PT	LG	1,450,000
		DUB22SB2	LG	1,190,000
		DW60T7065SS	삼성	850,000
전기쿡탑		BEY3GBI	LG	850,000
	BEI3GQBI	LG	1,050,000	
	BEI3WWQLBI	LG	1,200,000	
	NZ63T5701AK	삼성	680,000	
	NZ63B5056AK	삼성	950,000	
전기오븐	MZ385EBT1	LG	430,000	
	NQ50T8539BK	삼성	870,000	

▶ 인테리어

(단위:원, VAT포함)

품명	주택형 구분 [약식표기 (타입)]	세부사항	제품상세	제조사	판매가
욕실팬	전 주택형		FHD3-C150P	힘펠	1,080,000
세대 통합 정수시스템	전 주택형		KES-504	더블루코리아	410,000
욕실 비데	전 주택형	공용욕실+부부욕실		보보	1,100,000
사각싱크볼+수입수전	전 주택형	싱크볼(국산)+수전(수입)	Nobili LIVE 수전	노빌리	880,000
증문	84A/84OA/84OB	확장기본형	비대칭스윙도어		1,890,000
	91A/91OA/91OB	확장기본형	비대칭스윙도어		1,890,000
	105A/105OA/105OB	확장기본형	비대칭스윙도어		1,890,000
	112A/112OA/112OB	확장기본형	원슬라이딩		1,260,000

마루(국산)	59A	확장기본형			1,130,000
	59A	무상선택형			1,130,000
	72A/72OA/72OB	확장기본형			1,380,000
	72A/72OA/72OB	주방평면옵선택형			1,380,000
	74A/74OA/74OB	확장기본형			1,380,000
	74A/74OA/74OB	무상선택형			1,380,000
	84A/84OA/84OB	확장기본형			1,480,000
	84A/84OA/84OB	주방평면옵선택형			1,470,000
	84A/84OA/84OB	침실2 슬라이딩도어형			1,490,000
	84A/84OA/84OB	거실통합형			1,490,000
	84B/84OC/84OD	확장기본형			1,510,000
	84B/84OC/84OD	복도장+침실1슬라이딩도어형			1,510,000
	91A/91OA/91OB	확장기본형			1,710,000
	91A/91OA/91OB	주방평면옵선택형			1,710,000
	105A/105OA/105OB	확장기본형			2,020,000
	105A/105OA/105OB	알파룸 슬라이딩도어형			2,030,000
	112A/112OA/112OB	확장기본형			1,980,000
	112A/112OA/112OB	침실3 수납강화형			1,980,000
	120A/120OA/120OB	확장기본형			2,090,000
	120A/120OA/120OB	알파룸 수납강화형			2,110,000
주방가구특화	59A	조명 플랩장	플립장+노출형후드+타일가감		1,320,000
	72A	조명 플랩장			1,120,000
	74A	조명 플랩장			1,250,000
	84A	대면형 주방("ㄷ"→"11")+조명형 플랩장	BEY3GBI	LG	1,770,000
	84A	대면형 주방("ㄷ"→"11")+조명형 플랩장	BEI3GQBI	LG	1,770,000
	84A	대면형 주방("ㄷ"→"11")+조명형 플랩장	BEI3WWQLBI	LG	1,770,000
	84A	대면형 주방("ㄷ"→"11")+조명형 플랩장	NZ63T5701AK	삼성	1,770,000
	84A	대면형 주방("ㄷ"→"11")+조명형 플랩장	NZ63B5056AK	삼성	1,770,000
	84B	조명 플랩장			1,220,000
	91A	조명 플랩장			1,030,000
	105A	조명 플랩장			350,000
	112A	대면형 주방("ㄷ"→"11")	BEY3GBI	LG	1,430,000
	112A	대면형 주방("ㄷ"→"11")	BEI3GQBI	LG	1,430,000
	112A	대면형 주방("ㄷ"→"11")	BEI3WWQLBI	LG	1,430,000
	112A	대면형 주방("ㄷ"→"11")	NZ63T5701AK	삼성	1,430,000
	112A	대면형 주방("ㄷ"→"11")	NZ63B5056AK	삼성	1,430,000

	120A	복도대면형 주방("ㄷ"→"ㄱ")+조명형 플랩장		3,260,000
침실특화	84A/84OA/84OB	침실2 슬라이딩도어형		3,000,000
	84B/84OC/84OD	복도장+침실1슬라이딩도어형		3,020,000
	105A/105OA/105OB	알파룸 슬라이딩도어형		2,730,000
	112A/112OA/112OB	침실3 수납강화형		2,330,000
	120A/120OA/120OB	알파룸 수납강화형		1,670,000
주방세라믹타일(상판+벽)	59A	확장기본형		7,390,000
	59A	주방특화형		10,120,000
	72A/72OA/72OB	확장기본형		5,500,000
	72A/72OA/72OB	주방특화형		8,850,000
	74A/74OA/74OB	확장기본형		5,700,000
	74A/74OA/74OB	주방특화형		9,090,000
	84A/84OA/84OB	확장기본형		5,520,000
	84A/84OA/84OB	주방특화형		10,120,000
	84B/84OC/84OD	확장기본형		5,530,000
	84B/84OC/84OD	주방특화형		9,300,000
	91A/91OA/91OB	확장기본형		6,520,000
	91A/91OA/91OB	주방특화형		10,740,000
	105A/105OA/105OB	확장기본형		5,280,000
	105A/105OA/105OB	주방특화형		6,150,000
	112A/112OA/112OB	확장기본형		5,540,000
	112A/112OA/112OB	주방특화형		10,470,000
	120A/120OA/120OB	확장기본형		8,970,000
120A/120OA/120OB	주방특화형		6,330,000	
벽면특화 1 (거실/복도세라믹+판넬)	59A	확장기본형		8,470,000
	59A	무상선택형		8,130,000
	72A/72OA/72OB	확장기본형		12,210,000
	74A/74OA/74OB	확장기본형		7,660,000
	84A/84OA/84OB	확장기본형		6,000,000
	84A/84OA/84OB	침실특화형	침실2 슬라이딩도어형	5,570,000
	84A/84OA/84OB	거실통합형		7,550,000
	84B/84OC/84OD	확장기본형		9,190,000
	84B/84OC/84OD	침실특화형	복도장+침실1슬라이딩도어형	8,460,000

	91A/91OA/91OB	확장기본형		12,890,000
	105A/105OA/105OB	확장기본형		19,580,000
	112A/112OA/112OB	확장기본형		17,450,000
	112A/112OA/112OB	침실특화형	침실3 수납강화형	17,550,000
	120A/120OA/120OB	확장기본형		16,150,000
벽면특화 2 (현관/복도판넬+신발장하부조명)	59A	확장기본형		1,490,000
	59A	무상선택형		2,010,000
	72A/72OA/72OB	확장기본형		3,460,000
	74A/74OA/74OB	확장기본형		1,690,000
	74A/74OA/74OB	무상선택형		1,410,000
	84A/84OA/84OB	확장기본형		6,290,000
	84B/84OC/84OD	확장기본형		2,580,000
	91A/91OA/91OB	확장기본형		3,380,000
	105A/105OA/105OB	확장기본형		4,170,000
	105A/105OA/105OB	침실특화형	알파룸 슬라이딩도어형	3,860,000
	112A/112OA/112OB	확장기본형		5,240,000
	120A/120OA/120OB	확장기본형		5,890,000
	120A/120OA/120OB	침실특화형	알파룸 수납강화형	5,830,000
	안방드레스룸특화	74A/74OA/74OB	확장기본형	
84B/84OC/84OD		확장기본형		2,570,000
91A/91OA/91OB		확장기본형		1,980,000
105A/105OA/105OB		확장기본형		5,840,000
112A/112OA/112OB		확장기본형		5,120,000
120A/120OA/120OB		확장기본형		4,680,000
조명특화	84B/84OC/84OD	확장기본형		6,860,000
	112A/112OA/112OB	확장기본형		10,070,000
	120A/120OA/120OB	확장기본형		9,870,000
각실제어환기케어시스템	59A	확장기본형		1,730,000
	72A/72OA/72OB	확장기본형		1,870,000
	74A/74OA/74OB	확장기본형		1,870,000
	84A/84OA/84OB	확장기본형		2,360,000
	84B/84OC/84OD	확장기본형		2,220,000
	91A/91OA/91OB	확장기본형		2,220,000
	105A/105OA/105OB	확장기본형		2,710,000
	112A/112OA/112OB	확장기본형		2,850,000
			HDC랩스	

	120A/120OA/120OB	확장기본형			2,710,000
샤시 upgrade	59A			profine	9,700,000
	72A				7,630,000
	72OA				11,540,000
	72OB				11,540,000
	74A				7,790,000
	74OA				9,270,000
	74OB				9,270,000
	84A				10,630,000
	84OA				12,320,000
	84OB				12,320,000
	84B				12,090,000
	84OC				16,950,000
	84OD				16,950,000
	91A				13,890,000
	91OA				17,560,000
	91OB				17,560,000
	105A				14,240,000
	105OA				18,150,000
	105OB				18,150,000
	112A				15,800,000
	112OA				19,710,000
	112OB				19,710,000
	120A				15,460,000
	120OA				21,710,000
	120OB				21,710,000
	143P				24,030,000
	145P				32,200,000
	159P				35,940,000
161P			35,250,000		
167P			25,780,000		
170P			31,690,000		
244P			47,190,000		

▶ 현관중문

- 현관중문 미선택 시 중문틀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현관중문 디자인은 본 아파트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하는 품목으로써 계약 시 디자인, 제품사양, 설치 등에 대해 교체 및 변경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현관중문의 구성품 중 유리는 강화유리(5T)로 시공되나 물리적인 충격에 의해 파손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은 기밀, 차음, 단열 등의 성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공간 분리 및 시야차단의 목적에 한해 설치됩니다.
- 현관중문은 본 공사 시 제조사 및 규격, 하드웨어 사양, 색상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하는 경우는 현관에 소방 화재감지기가 설치되지만, 옵션을 선택하지 않는 세대는 현관에 소방 화재감지기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스위치, 콘센트류), 스마트스위치, 기타 기기 등의 설치위치, 수량, 사양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의 설치여부에 대하여 입주자모집공고 시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금액은 옵션 선택으로 인해 시공되지 않는 기본마감과의 차액을 정산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 이상의 다른 제품(타사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의 경우 사용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전류의 에너지효율등급은 동일한 제품일지라도 등급산정 기준 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으며 계약 전 위치 확인하기 바랍니다.
- 각 평형별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은 평면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각 평형별 옵션 선택에 따라 단열 및 벽체, 창호, 마감재 사양이 변경되어 시공됩니다.
- 각종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선택에 따라, 해당 타입에 설치되는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등)의 위치가 다를 수 있으며,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 및 가구 등이 제공되는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선택 유무에 따라 제공되는 가구의 형태 및 사양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선택 시 기본 설치되는 수납공간이 미제공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4조와 제4조의2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제시하여 추가로 품목을 선택 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 외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은 자재 발주, 시공 개시 등 비용 발생 이후부터는 계약을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없으며, 시공상의 일정 등으로 비용 발생 시점을 통보하지 않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구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의 위치 및 선택 항목은 당사 분양 홈페이지 또는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선택 시 제품 특성상 소음, 진동 및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전류의 온/오프라인 판매가는 계약시점과 입주시점이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 시 이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품목 외 판매되는 옵션의 경우 시공사(HDC현대산업개발)와는 무관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은 공동주택 분양계약과 별도로 판매.진행되며, 판매일정, 계약내용, 납부일정, **납부계좌 및 제품관련 사항** 등은 **추후 분양계약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될 예정입니다.**

■ 공통사항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판매가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의 가격은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구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은 시공상의 일정관계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이 불가합니다.(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 일정은 옵션별 상이하며, 자세한 일정은 추후 통보 예정임)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은 공급계약에 부수되는 마감공사 관련으로 소요자재를 선발주하여 미리 확보하여야 하고, 특히 계약 이후에는 계약 해제, 변경 시 원상회복, 변경공사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하는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단, 수분양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할 경우 사업주체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주택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은 본 아파트 계약 해제사유와 동일하며, 아파트 공급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함께 해제됩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총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금액의 10%는 위약금으로 사업주체에 귀속됩니다. (단,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한 착수일(공사업체 및 자재선정 등의 업무 포함) 후에는 사업주체는 위약금을 초과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수분양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은 본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양도/양수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 공급계약 양도/양수 시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에 의거하여 '도급 증서'(과세문서 1통마다 납부)로서 인지세 과세대상이며 계약 체결 시 과세기준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에 전시(일부 또는 전체)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항목 외 시스템에어컨 등 추가선택품목들은 향후 별도 공지합니다.

■ 시스템에어컨 관련 사항

- 시스템에어컨 공급금액은 각 세대별 에어컨 냉매배관 설비 시공비용을 감액하고 산정한 금액임.
- 시공상의 문제로 옵션행사시점 이후에는 시스템에어컨 및 유상옵션 계약이 불가함.
- 발코니 확장 선택시 시스템 에어컨 선택이 가능함.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시 기 선정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시스템에어컨 및 유상옵션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여야함.
- 시스템에어컨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거실은 스탠드, 안방은 벽걸이형 기준으로 총 2개소의 냉매배관만 시공됨.(시스템에어컨 선택시 거실의 스탠드형, 안방의 벽걸이형 기준의 냉매 배관을 설치하지 않음)
- 천정형 시스템에어컨의 실내기 설치 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음.
- 천정형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천정형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정 높이가 변경될 수 있음.
- 천정형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리모컨)으로 제공되며,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됨.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음.
- 천정형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
- 천정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추가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음.

8 유의사항 및 단지 내외부 여건

※ 다음의 유의사항을 청약 전에 반드시 확인 및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공통]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본주택에는 84B, 112A, 120A형이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되지 않은 그 밖의 평형 및 타입은 단위세대 모형과 카탈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 전에 평면 형태, 가구배치, 실면적 등 견본주택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마감자재 및 내부 가구의 형태 및 규모는 주택형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계약 전에 견본주택 및 모형, 인쇄물을 반드시 확인 바라며, 도면과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으로 합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시공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 옵션품목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고, 옵션품목은 유상으로 추가 선택 시에만 설치되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됩니다.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옵션형) 타입으로 건립되어 있으며, 기본형 선택 시 마감재, 가구, 우물천장, 위생기기, 조명기구 등의 디자인, 사양, 개수 및 설치 위치가 견본주택과 상이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연출용 가구, 패널, 커튼, 액자, 조명 및 장식 소품, 가전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전시용 품목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카탈로그,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모형의 조경, 식재, 시설물(DA, 쓰레기 분리수거함 등), 바닥마감패턴, 웅벽패턴, 높이 및 마감,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및 단지레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세대 내에 설치된 아래 품목은 실시공 시 제품사양 및 수량,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비기기 : 환기유니트, 환기디퓨저, 온도조절기, 선풍통, 바닥배수구, 위생기구, 욕실 약세사리, 각종 수전류, 환기팬, 스프링클러 - 전기기기 : 조명기구, 조명 스위치, 대기전력 차단스위치, 콘센트, 화재감지기

<p>견본주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는 견본주택 운영을 위한 것이며 본공사 시 소방법규에 적법하게 설치됩니다. 실별 설치 위치 및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에 적용된 마감재는 자재의 독점,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 경쟁입찰 등에 따라 등급 또는 등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천장형에어컨은 견본주택을 위한 장치로써, 본공사 시 냉방 전용 제품으로 설치됩니다. • 세대내 벽체 두께 변경에 따라 문틀 폭이 모델하우스와 다르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세대 시공과 무관하며, 실 시공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됩니다. • 견본주택 및 본 공사에 설치된 환기유닛, 환기디퓨저, 온도조절기, 선홍통, 바닥배수구, 위생기구, 욕실 악세사리의 수량,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공사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점검구, D/A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모형, 각종 홍보물 상의 CG 등은 일부 내용이 사업시행인가 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장 여건에 따라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이점 사전에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의 전시품(모형 등), 홈페이지, 카탈로그, 팸플릿 등 각종 홍보물 및 조감도, 투시도, 사진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각종평가 또는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 설치된 단지모형의 입면, 색채, 조경계획 및 식재, 시설물, D/A, 쓰레기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대, 포장,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단지레벨, 방음벽, 옹벽 패턴, 높이 및 마감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 또는 삭제, 추가될 수 있으며, 일부내용은 모형상에 생략된 사항도 있으며, 외부 조경 바닥마감 색상 및 패턴은 본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에 표현된 데크, 주민공동시설, 상가부분의 마감은 본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지하 출입구와 지하 엘리베이터 홀의 형태는 동별, 호수별 차이가 있으며,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기 바랍니다. •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단지 내 위치, 층수, 주변 시설물 등에 의하여 세대 시야 간섭, 일조량, 소음, 에너지소비량, 단열성능 등의 주거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의 모형 및 기타 분양홍보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설계변경도서 포함)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외부 창호와 난간,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 안내 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본 공사 시 업체,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 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협력업체 계약 및 외부 입면 계획에 따라 디자인, 프레임 사이즈, 유리 사양, 핸들, 외장재, 색상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되지 않은 주택형 및 타입에 대해서는 카달로그 및 각종 홍보자료를 충분히 숙지 하시고 분양 상담을 통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평면, 마감재 및 단지 내 시설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 및 타입별, 옵션선택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p>분양홍보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카탈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일러스트(그림), 광역위치도(약도 및 지도 포함), 토지이용계획도, 조감도, 단지배치도, 조경 및 부대시설,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평면도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전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동일한 평면이라도 위치에 따라 입면재료 및 창호가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해당 세대의 입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면재료에 따라 창호의 크기 및 상세가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홍보에 사용된 모형(단지모형 등)과 견본주택의 사인물, 카탈로그 및 각종 인쇄물, 홈페이지, 기타홍보물에 삽입된 CG(광역위치도, 조감도, 배치도, 투시도, 조경도, 부대복리시설 및 단위세대 평면도등)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제작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또한 동선, 기능, 성능개선 및 인·허가 과정의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현장여건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 도로 및 대지경계선 밖 도로 등은 단지내 소유가 아니며, 실시공과 형태, 높이, 레벨계획 등이 상이할 수 있고 특히, 도로 계획과 관련하여 착공 및 분양 이후, 계획변경인가 등으로 인한 인·허가청 협의의견 및 조건에 따라 실시공 시, 카탈로그 및 모형, CG 등 분양홍보물에 표현된 바와 그 도로와 대지와와의 경계, 도로 및 보도 선형 및 패턴, 레벨계획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 상의 평면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단위세대는 같은 타입이더라도 면적 및 형태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공고 시에 제시된 CG[컴퓨터그래픽],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시행인가 또는 설계의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고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며,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단지모형도, 전시물(건축물, 조경 및 시설물 등)의 CG[컴퓨터그래픽]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분양대금 납부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와 관련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리플렛, 전단지, CG이미지컷, 현수막 등)은 사전 홍보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이와 관련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본형 세대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공간분할 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홍보물(분양 카탈로그 등)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 상의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의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기본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장품과 별도 유상옵션이 포함된 VR동영상상이므로, 계약 전에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사이버 견본주택 상의 전시장품 및 유상옵션품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되지 않은 평형 및 타입은 단위세대 모형과 카탈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 전에 평면 형태, 가구배치, 실면적 등 견본주택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광고 및 홍보물(견본주택, 리플렛, 전단, 분양안내, 홈페이지, 신문광고 등) 등에 표시된 주변 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및 각종 시설(도로(차도 및 보도, 터널), 공공청사, 학교, 근생시설, 의료시설, 보육시설, 종교시설, 지하철 역사 및 노선, 버스정류장 및 노선, 공원, 녹지 등)의 조성계획(예정사항)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중인 사항을 표시한 것으로서 각종 인·허가 과정 및 시행주체 또는 국가 정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청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교는 한천초등학교에 배정할 예정이며, 향후 배정방법은 교육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북부교육지원청 관할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으로, 이에 대해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학생배정계획은 향후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며, 사업추진계획의 변동 및 관할 기관의 정책변화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 등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단지 내외부 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외부 도시계획도로, 대지 경계 바깥의 시설(공공공지, 공공용지) 및 공원·녹지는 시공사의 시공구역에서 제외되니 단지 주변여건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 사업지 단지내의 도로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대지경계와 건축한계선 내에 있는 공개공지 및 기반시설(도로), 보도는 노원구에 지상권이 설정이 될 예정입니다. 또한, 공개공지는 지상권의 설정과 관계없이 향후 유지관리 의무는 입주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며, 관련 사항은 최초 입주 이후 입주자 협의회에서 협의되어야 합니다. · 당 사업지 근린생활시설 2,3층에서 당 사업지 북측의 상업업무용지 2,3층과 연결되는 지상 연결통로(2개소)와 당 사업지 지하 3층에서 상업업무용지 지하 3층으로 연결되는 지하 연결통로(2개소)는 설치 후 점용 사용료(매년)의 납부 및 향후 유지관리 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사항은 최초 입주 이후 입주자협의회에서 협의되어야 합니다. ※ 점용료, 사용료 및 유지관리의 비용은 허가권자와 협의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업용지는 복합시설 (오피스, 소평물(판매시설), 호텔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향후 소음, 교통혼잡 등 불편이 있을 수 있으며, 해당 시설들은 인허가 과정 및 시행 주체 또는 국가 정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를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혐오시설 유무, 도로, 조망, 일조, 진입로, 학교, 주변 상가 등) 및 현장 여건,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또는 주변 개발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건물에 의하여 조망권이 일부 제한되거나 일조량이 감소 할 수 있습니다.
-----------	---

[설계사항]

구분	내용
일반사항	<p>공사용 도서의 구체화 (세부도서작업) 과정 및 공사시 일부 허가도서의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수정 및 성능개선과 구조 상세해석에 따른 구조안전성 확보를 위한 구조 부재의 단면 및 주근 규격, 배근간격 등의 변경 등 품질제고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변경(입주자에게 별도 안내 및 동의 없이 진행함)에 대하여 시행자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시행자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p> <p>공동주택(아파트), 각종 부대복리시설, 지하주차장 등의 피트공간은 지반현황, 추가 지반조사 또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바닥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아파트 및 지하주차장 기초구조는 추가 지반조사 또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내진설계가 되어 있으며, 내진능력은 수정메르칼리 진도등급 Ⅶ - 최대지반가속도 0.204g입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 분야별 도서 또는 홍보물 상호간 오류로 인하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공사용 도서의 구체화 (세부도서작업) 과정에서 인허가도서의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수정 및 성능개선과 품질 제고를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시행자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시행자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지역난방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 본 단지는 지하수위 저감을 위한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입주후 이에 따른 관리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구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각 시설의 설치계획 등은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카탈로그, 단지모형 및 기타 홍보물에 표현된 주변 현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환경영향평가등 인허가 과정에 따라 단지내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재 측량결과에 따른 설계변경(대지면적 변경)이 진행될 수 있으며, 향후 지적확정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현황 측량 결과에 따라 사업부지 경계 레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보도레벨, 상가진입레벨 등이 달라지고 계단, 경사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는 동별로 차량 및 보도 이동 시 이동거리에 차이가 있으며, 해당 동의 주변레벨 관계, 동출입구의 위치, 단지 내외부 이동동선 및 단지 주변의 지하철과의 거리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변도로 및 인접단지, 근린생활시설, 학교, 공공시설, 각종 기반시설의 이용 및 공사 등으로 인한 소음, 진동,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주변 시설의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해당사항 미확인으로 인한 문제제기나 위 사항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후 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한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사용 도서의 구체화 (세부도서작업) 과정 및 실공사 시 일부 허가도서의 불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수정 및 성능개선과 구조 상세해석에 따른 구조안전성 확보를 위한 구조 부재의 단면 및 주근 규격, 배근간격 등의 변경 등 품질제고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변경(입주자에게 별도 안내 및 동의 없이 진행함)에 대하여 시행자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시행자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시행인가변경 시 기인가도서 상의 내용과 견본주택에 전시된 사항에 일부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인허가 진행과정 중에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계약 체결시 또는 이후 해당 변경에 대한 동의서를 요청할 경우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아파트), 각종 부대복리시설, 지하주차장 및 주차장 피트공간은 지반현황, 추가 지반조사 또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바닥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후 입주자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아파트단지 내의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시설물, 포장 등), 단지 내·외간 레벨 차에 의해 일부 세대의 전면/후면/측면의 경사면 처리공법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석축, 자연경사처리 구간의 설치여부, 단지 내외 연결 보도 및 계단, 지하주차장과 엘리베이터 연결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른 조망권, 일조권,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권의 침해 및 선형이나 공법, 위치 등의 변경에 대하여 계약자는 사업주체와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허가 진행 및 본공사시 외관 개선을 위하여 아파트 주동과 부대복리시설의 외관디자인(마감재료 및 패턴 디자인, 몰딩, 창틀 모양, 줄눈 등), 지하주차장 출입구, 외부시설물(난간, 드라이에어리어(DA), 조경패턴 등)은 심의 등 인·허가 결과, 구조 및 디자인 의도 등에 의해 형태, 재질, 색채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 의견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아파트)의 주거공용면적(계단실, 코아) 및 기타 공용면적 (분양동(공공임대 포함) 부대복리시설, 기계실 등)은 세대 면적에 따라 계산 배분됩니다.
- 면적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의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에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접세대 및 동일세대 내 각 부위별 확장 여부(상하좌우)에 따라 단열재 설치로 인한 벽체돌출 및 실사용 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타 현장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되는 부대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 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내부 구조벽체 제거 및 변경은 불가하며, 이를 어길 경우 민·형사상 처벌 대상입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른 합리적인 평면설계를 위하여 일부 타입의 단위세대 전용면적에는 발코니 초과면적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은 변경될 수 있으며, 타입별로 서비스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같은 타입이라 하더라도 면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업구역 내에 설치되는 도로, 공원 및 녹지는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 또는 인·허가 결과에 따라 일부 내용(동선, 시설물, 경사도 및 레벨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 외부의 도로, 시설물, 건물 등은 현재 상황 또는 계획을 보여주는 것(아파트 시공사의 공사범위가 아님)으로 CG 및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 녹지 및 기타 기반시설 등은 향후 인허가 결과(실시계획(변경)인가 등)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 기타 기반시설 등은 향후 토지이용계획의 실시계획(변경)인가에 의해 변경 가능합니다.
- 대지경계 및 대지면적은 준공 시 확정측량 등에 의해 다소 변경될 수 있고, 세대당 분양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 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업구역 내 유해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 시 견본주택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검사 때와 달리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될 경우에는 행정청에 이의제기 및 보상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소음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분양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조경식재, 조경시설물, 야간조명 및 측면 로고 설치 등의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 일체의 비용은 관리규약에 따르며,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 및 특정 서비스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물, 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휴대폰 및 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 서비스 운영 및 유지 등)은 입주자 부담입니다. • 도로 레벨은 서울시 노원구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연결부위(단지출입구, 도로설계, 시설물의 높이 등)의 설계사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설계변경의 결과에 따라 특화공사(기단부석재, 옥상장식물, 주동 입면디자인, 조경, 경관조명, 커뮤니티 시설 등)가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 주변 레벨차이로 옹벽, 경사면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조망간섭, 사생활권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현장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단지 주변 도로 및 보도의 선형, 재질, 경사, 레벨, 단차 등은 당 사업지와 무관하며 계약 전 반드시 현장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 이후 시행자와 시공자의 협의 및 사업시행(경미한)변경으로 인하여 면적 및 개요, 마감재, 조경 등의 일부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창호에 유리난간이 설치되며, 창호 사양 등으로 사다리차 이용이 제한적입니다. 계약 및 입주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및 지하주차장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p>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독서실, 돌봄센터, 주민운동시설 등)의 세부 시설은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주체가 사용공간을 제공하고 시설물 설치,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설치, 운영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 내 건립되는 부대복리시설(관리사무소, 어린이집, 작은도서관/독서실, 돌봄센터, 주민운동시설 등)은 각 동 하부에 연결되어 있는 주민공동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등 공용형 법정시설은 전체 세대 (분양동/민간임대동)가 공동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단, TOWER A동, B동(민간임대) 하부에 있는 법정시설(TOWER B동 하부 경로당) 및 특화시설은 민간임대동의 일부공용부분에 해당하므로 분양세대가 이용할 수 없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홍보물(분양카탈로그 등)의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마감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종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독서실, 돌봄센터, 등)은 기본마감만 제공되고 집기류는 제외되며, 카탈로그 등 각종 홍보물에 표기된 CG 등의 이미지 자료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 상의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향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부대복리시설은 본공사 시 내·외부 디자인과 용도, 규모, 구조, 높이, 재료, 창호사양 및 규격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선호,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각종 홍보물에 표기된 CG 등의 이미지 자료의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천장고, 입면디자인, 벽체 위치 및 기동설치 유무 등을 포함한 내부 레이아웃 및 디자인은 인허가 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마감재 및 제품품목, 진출입 동선 계획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각종 부대복리시설은 설치 위치에 따라 각 동별로 접근성, 사용성 및 편의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접한 세대에 소음 및 진동,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종부대시설 및 지하주차장, 근린생활시설은 동선, 성능개선 및 대관 인허가를 통하여 실시공 시 위치, 다른 실로의 변경·통합, 사용자동선, 입면 형태(색채, 재질, 간판 형태 모양), 실내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내·외부 디자인과 창호사양 및 규격은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평면계획은 인테리어 특화디자인 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및 외부 휴게시설 설치로 인해 이와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종 부대복리시설에는 이동식 가구 및 가전, 소모 집기 및 비품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의 근린생활시설은 별도 분양시설로서 아파트계약자가 임의로 설계변경이나 대지지분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근린생활시설 계획은 동선, 기능, 성능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각종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 위치는 시설 인접공간, 상부, 조경공간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인접세대의 환경권, 조망권 침해,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p>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현 배치에 따른 지하주차장 및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사용 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재의 배치 및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하며, 이로 인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 단지 지하에 쓰레기 보관소(재활용 폐기물 포함), 빗물저류조, 정화조(위치는 실제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인근 동 및 인근 근린생활시설은 이로 인한 소음 및 분진, 냄새 피해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추후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각 세대의 천정공간 내부에 인접세대를 위한 가스배관 및 에어컨배관, 위생배관 등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으며, 추후 임의로 해당 시설을 철거할 수 없음. 이를 점검하기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시공자는 준공 후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부대시설의 일부를 일정기간 동안 현장 A/S센터(가칭)로 사용하며, 시공자에게 이에 따라 발생하는 시설 사용에 대한 일체비용(임대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어린이놀이터, 부대복리시설, D/A(설비 환기구), 생활폐기물보관소, 관리시설, 주차램프, 외부계단 등의 설치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입점업체는 미확정이며, 입점업체와 관련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근린생활시설 옥상층의 옥상조경 및 부속시설(실외기 등) 설치로 인하여, 일부 주변 저층부 세대는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 내/외 바닥레벨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출입구 및 내부 바닥에 경사(슬로프)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카탈로그 등 각종 홍보물에 표기된 CG 등의 이미지 자료의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향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의 실 명칭은 추후 실용도의 성격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또한 부대복리시설은 대관 인허가를 통하여 실시공시 위치, 다른 실로 변경/통합, 사용동선, 입면형태, 실내구획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2개동(101,102 / 103,104 / 105,106 / 민간임대동 TOWER A, B동)을 기준으로 한 개의 단지 개념으로 주민공동시설을 각각 설치하였으며, 인접하여 연결된 시설을 이용하여, 사용성, 편의성을 갖는 개념으로 특화계획 되었습니다. 단. 주차장 및 주민공동시설 중 단독형 법정시설, 특화시설 등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0조에 따른 일부공용부분에 대하여는 각 주거유형별로 할당된 시설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 인지가 필요하며, 입주 후 입주자 대표위원회(101~106동) 및 민간임대 운영주체(TOWER A,B동)는 해당 사항을 기준으로 운영하며, 방침에 따라 일부 변경 될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은 현장 여건에 따라 PC 또는 철골구조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시공시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천정고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각 동별로 부대시설의 층수 및 위치가 상이하므로 계약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창고는 분양동에 한해 세대당 1개소씩 지하주차장에 제공되며, 동출입구에서 이격된 곳에 설치될 수 있으며, 세대에 따라 위치(지하 층수)가 다를 수 있으며,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면적 증감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내부평면계획은 인테리어 특화디자인 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내부평면 및 단면 계획변경에 따라 외부 입면도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 조경공간 등은 실시공시 대관 인·허가과정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면적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세대의 기타공용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계획된 부대복리시설(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커뮤니티시설 등) 및 산책로 설치로 인해 아파트 세대의 실내가 투시 될 수 있으며, 일부세대는 소음발생에 따른 사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공용부 마감이 다소 매끄러운 고급타일 또는 바닥 화강석 물갈기 제품이 적용될 경우 미끄러짐에 주의해야 합니다.
 - 관리사무실,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주민회의실,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은 기본 마감만 제공되고 집기류는 포함되지 않으며, 사업시행인가 도서와 상이할 경우 카탈로그를 우선합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외부 커뮤니티 공간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경로당,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 관리사무실, 지하주차장, 경비실 등 부대복리시설 및 판매시설 시설물은 동선, 성능개선 및 대관 인·허가를 통하여 실시공시 위치, 다른 실로의 변경 및 통합, 사용자 동선, 입면 형태(색채, 재질, 간판 형태 모양), 실내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집기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가전, 소모 집기 및 비품 등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커뮤니티 및 부대복리시설의 천장고(내부높이)는 시공성 및 설비, 전기 배관 등의 간섭 등으로 인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실제 공사시 피트니스 운동기구 종류 및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용 에어컨 실외기 및 환기 시스템 등으로 인해 인접한 일부 세대의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p>국공립어린이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아파트 단지의 각 부대복리시설 내에는 「주택법」 제35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2, 보건복지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및 “연도별 보육사업 안내”에 따라 관할 지자체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해당 어린이집 공간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운영될 예정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관할 지자체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와 체결할 예정이며, 해당 협약은 추후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승계될 예정입니다. •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12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입주예정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으로 해당 어린이집 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운영하는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거나 관할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이 필요치 않다고 심의할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은 관련 법규 및 관할 관청인 보건복지부의 관련 규정과 지침(관련 가이드라인 및 연도별 보육사업 안내 등을 포함한다.), 관할 지자체인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관련 규정 등에 의거하여, 관할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운영 될 예정입니다. • 보건복지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및 “연도별 보육사업 안내”에 의거하여 당 아파트 입주인 자녀에게 어린이집 정원의 70%까지 우선적으로 입소배정을 할 수 있고, 입주인 자녀 우선입소 배정 이후 잔여 인원은 입주인 자녀와 단지 외부 자녀가 입소 순위대로 배정되며, 개원 후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이용자 편의를 위해 외부차량이 단지 내 출입 및 임시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가이드라인” 및 “연도별 보육사업 안내”에 의거하여 어린이집 관리비는 향후 서울특별시 노원구(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선정하는 운영자(원장)를 포함한다.)에게 인건비, 승강기유지비, 용역비 등 공용관리비를 제외한 “개별사용료”만 부과됩니다.
<p>지하주차장</p>	<p>지하주차장 출입 근방에 위치한 세대는 환경권 및 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 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면적 증감, 주차대수 변경 및 위치이동 등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주차장출입구는 4개소로 드롭오프존과 함께 2개동 단위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출입구는 1개소로 공동으로 사용하며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은 별도 지정되어 있으나, 단지 내 외부인의 출입이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되어 시공되며, 일부는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위한 각종 배관, 배선 및 가스배관 등의 루트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지하층 내 PIT 내부의 경우 천장 및 바닥, 벽체부의 마감은 미시공됩니다. • 지하주차장 내부에 설치되는 집수정 및 집수정의 펌프로 인하여, 펌프 작동 시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하여 인접세대로 전달될 수 있으며, 집수정 펌프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저층부 세대는 이를 인지하 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추후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주차는 동과 주차장의 위치 및 형태 등에 따라 주차장 이용의 사용성 및 편의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입주자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 (101~106동에 할당된 주차대수 및 주차 구역으로 제한됨)으로 각 동별·세대별로 주차라인을 지정하여 주차할 수 없습니다. 단, 민간임대 2개동 (TOWER A,B동)은 색채로 별도 구분하여 운영 예정이고, 분양동 입주자는 민간임대동에 할당된 주차 구역을 이용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 계획은 동선, 기능, 성능개선을 위하여 면적증감, 주차대수변경 및 위치이동 등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진출입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의 형태, 색상, 외관, 마감재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현재의 배치 및 이에 따른 사용 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재의 배치 및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로 인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진출입 경사로는 동절기에 차량의 미끄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준공입주 후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공간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지하층은 밀폐된 공간으로 환기부족 시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수위 저감을 위한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지하주차장 내에 별개의 지하수 배수를 위한 영구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입주 후 이에 따른 관리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시스템, 주차 위치 및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의 환기를 위한 시설물(환기팬, D/A)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인접세대는 소음 및 진동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각 주동의 위치 및 주차 진출입구, 램프의 위치,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 관련 공간 계획으로 인해 각 주동별로 주차장 이용에 거리와 동선의 불편함이 따를 수 있으며 계약전 필요시

	<p>인허가도서를 확인하기 바랍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실, 발전기실, 저수조 등 각종 기전시설 공간이 지하에 계획되어 있으며, 이와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진동의 발생으로 인한 생활권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배수 트렌치는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내 택배배달차량, 쓰레기수거차량 이동 등을 고려한 차량통행구간 유효높이 2.7m로 계획되었으며, 주차구획은 2.1m 이상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차량 이용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구간의 층고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구조는 현장여건에 따라 PC+RC 복합공법, 데크플레이트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 민간임대 세대가 지하주차장을 공유하고 있으나 실시공사 색채 계획으로 주차구획을 구분할 예정입니다. (민간임대동은 TOWER A동, TOWER B동 인접하여 계획 예정) <p>지하주차장 구조는 PC 또는 DECK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적용범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주차장 상부에는 각종 설비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출입구 및 드롭오프존의 층고는 실시공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동은 지하주차장이 전체 연결이되지 않으므로, 해당 내용을 계약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 대수는 세대당 1.3대로 계획되어 있으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p>아파트 주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분의 시설물(계단, 엘리베이터홀, 승강기용량, 탑승위치) 등은 최종사업시행(변경)인가 도면의 내용에 준하며, 일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상/지하 동출입구 등의 공용부분은 동 형태에 따라 규모, 마감재, 디자인 등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해당사항은 입주자의 선호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저층부 2개층의 외벽마감은 지정석재로 마감될 예정이며 계단실 등 코어외벽 및 일부구간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석중, 재료의 색상 및 디자인, 석재 및 페인트 등 재료의 적용비율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허가 및 현장 여건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출입구 근처 필로티 내, 주동 주변과 단지 조경공간에는 제연휨룸 및 휨룸 급배기를 위한 환기구 (D.A)가 설치될 수 있어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꼭 필요한 시설로, 추후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옥상에는 정화조/근린생활시설 주방배기를 위한 환기창(배기덕트)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한 동에서는 냄새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이는 꼭 필요한 시설로, 추후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저층부 및 일부세대는 공공보행통로, 근린생활시설, 어린이놀이터, 휴게공간, 주민운동시설, 주차장 출입구 등이 위치하여 소음피해 및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동배치 상 생활폐기물보관소와 인접한 세대는 냄새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계약자는 사업주체와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동 저층부는 석재마감 및 상부 몰딩설치에 따라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저층부 차별화마감 적용 시 별도마감 적용부위의 세대 및 공용부 창호의 폭과 높이가 마감을 위한 필요한 치수만큼 축소 또는 외부마감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저층부 마감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외시설물, 옥탑, 지붕,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높이) 등의 형태,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주동 외벽의 색채, 마감재, 외관디자인 등은 현장시공 및 향후 상위 지침변경, 인허가과정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옥상에 계획되어 있는 옥상녹화 부분은 현장여건 또는 각종 인증 등에 따라 설치 유무, 규모 및 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상 장식물의 높이 및 사이즈와 태양광 패널의 크기 및 위치 등은 시공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현장 여건에 따라 일부 시설의 통합 시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점 사전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무인택배시스템은 지하출입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별, 라인별로 이용거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지하2층 지하3층에 제연실(제연휨룸), 등이 계획되어 있어 일부 저층 세대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탑층(측벽 포함)에 의장용 구조물, 위성안테나, 피뢰침, 태양광 발전설비, 이동통신설비 중계기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 안면방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출입구의 장애인용 경사로, 단지외부 도로, 단지 내 도로(차도, 비상차도, 산책로, 지하주차장, 경사로 등), 주차램프 등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불빛에 의한 생활권 등 각종 환경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대 창호에 유리난간이 설치되며, 창호 사양 등으로 사다리차 이용이 제한적입니다. 계약 및 입주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동별, 라인별로 설치되는 엘리베이터의 대수, 인승, 속도 등은 관계법규가 정한 기준 및 심의조건 등에 맞추어 계획되었으며, 층수 및 사용세대수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의로 조정하지 않아 동별, 라인별로 사용인수 대비 대수 및 인승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부 동의 경우 평면구성에 따라 엘리베이터 승강로와 인접하여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현관이 마주하고 있거나 전면에 엘리베이터홀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저층/고층 엘리베이터가 분리되어, 각 층별로 이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다르므로 계약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엘리베이터 운영 방식은 준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동일 평형이나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상의 단위세대와 대칭형(좌우대칭 및 세대현관 출입구 방향이 상이)으로 시공되는 세대가 있으니 계약 전 해당 평면 및 동호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타입별 동호수 위치는 분양 카탈로그를 참고)
 - 단지 내 각종 공용시설(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사용 시 각 동별로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의 위치에 차이가 있어, 사용상의 여건(일부 동의 경우 사용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에 차이가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일부 지하층 엘리베이터 홀 및 주차장 연결통로 등에 주변과의 온도차 등에 의해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제거하기 위한 제습기 가동(최하층 엘리베이터 홀에만 적용)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될 예정입니다.
 -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창호의 설치 유무 및 창호크기, 또는 창위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창호의 크기 및 형태는 설계변경 등의 절차를 통해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위치에 따라 단지 내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이용 편의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점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쓰레기분리수거 보관시설이 지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동별, 라인별로 이용거리에 차이가 있으며, 인근에서 해충, 냄새 및 분진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택배차량 및 쓰레기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소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동별로 해당층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이 설치됩니다. 일부 세대의 경우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로 냄새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 각 동 최상층에 승강기 기계실 설치로 인해 일부 소음, 진동이 발생(층수 차이로 인해 일부 세대 침실은 기계실과 인접하여 배치됨)될 수 있고, 승강기, 각종 기계, 환기, 공조, 전기 등의 설비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주동 옥상난간대 및 발코니 난간대의 소재, 색상 및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별 주동 출입구는 동별 특성에 따라 디자인 및 높이, 폭, 동선 등이 상이하며 주동 출입구로 인해 인접세대에 소음, 일조권, 조망권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동 출입구 내부의 평면계획(지하층 로비/복도 포함), 기타층 엘리베이터 홀과 계단실의 평면 및 창호형태는 상세계획에 따라 공사 중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공용부의 창호(계단실, 엘리베이터 홀 등)에는 방충망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TV공청안테나 및 위성수신안테나는 전파수신이 양호한 아파트 지붕(옥상)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 아파트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아파트 준공 전 공사용 운행 등 시험운전을 거쳐 이관되며, 이에 따른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동의 필로티 상부층 세대는 필로티에 놀이/휴게/운동시설물 등이 설치될 경우, 시설의 이용과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자전거보관소가 각 동 필로티 또는 실외에 배치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소음, 분진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옥상장식물 및 옥탑구조물은 현장 여건에 따라 PC, DECK 또는 철골 구조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정화조 설치 구역에 따른 정화조 배기탑이 동 옥탑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냄새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소방법에 의한 소화용 고가수조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는 발전기 및 지하시설물 환기용 급, 배기구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일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내 지하에는 기계실 및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 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어있는 일부 동의 필로티 옆,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가스배관 설치 계획에 따라 가스배관이 외부에 설치될 수도 있습니다.
 - 각 동 1층 인근 및 필로티 내에는 제연휨룸의 그릴창이 설치되어 작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전용면적 천장 내부가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가스배관 등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전기, 통신, 맨홀 등의 인입위치 및 오수 배관의 위치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계/전기실 등은 본 공사시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협의 후 최종 확정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기계실, 전기실, 지하주차장 등의 급배기용 DA가 지상에 노출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시설과 인접한 세대는 미관저해 및 소음,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층(저층) 전/후면에 소방법상 공기안전매트 설치 등 소방활동 공간이 필요하므로 식재에 따른 프라이버시 확보부분이 미흡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단지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부지 철도변 대지경계 또는 녹지의 경계등에 방음벽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저층부 일부 세대는 조망권 등의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의 경우 앞 또는 옆 세대 사이와 거리가 가까워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지배치/조경

- 출입구 근방에 설계된 주동의 경우 소음 및 분진, 및 차량 헤드라이트 등에 의한 사생활 침해 및 차량출입표시기에 의한 소음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지하주차장 출입구 등 구조물로 인해 조망권이 일부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시행인가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의 식재수종, 비상차량동선 및 어린이놀이터 위치 및 크기, 조경시설물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차 차단기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차량 출입구(비상차량동선 포함)과 보행자 출입구로 인한 인접세대의 사생활 및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사이버 견본주택,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 시설(학교, 지하철, 도로, 공공용지, 완충녹지, 경관녹지, 공원 등)은 허가관청 및 국가시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과 인접한 세대의 경우 해당 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설비시설 등으로 인한 조망권 및 소음, 진동에 의한 환경권, 사생활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저층세대는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설비시설 등으로 인한 조망권 및 소음, 분진 및 냄새, 진동에 의한 환경권, 사생활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대 위치에 따라 도로 및 차량 이동 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단지 내 각종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이용성에 차이가 있으니, 계약 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본시공 시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장여건 및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출입구 높이,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장여건 및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주위 도로 폭, 단지 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조경시설, 포장), 단지 레벨 차에 따른 옹벽 및 사면, 자연석, 계단, 램프의 형태 및 종류, 노출범위,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의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 레벨(계획고)이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지 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배치도(CG, 모형 등)의 바닥 마감패턴, 칼라 등은 추후 디자인 의도 및 인허가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배치관련 사항들은 (경미한)설계변경 등의 절차를 통해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견본주택에 비치된 모형도, 도면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일조불만족 세대가 있으니 견본주택에 비치된 도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 하시기 바랍니다.
- 저층부 세대의 경우 일조만족이 어려울 수 있고, 고층이라 하더라도 배치 계획에 따라 일조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배치는 특별건축구역 신청 및 지정에 따른 법정거리를 준수하여 계획하였으나, 동 배치에 따라 일부 세대는 일조권이나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침해 및 일조량 감소가 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물건의 계약체결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석축 등의 종류/높이/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과 배치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조망권/환경권/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부대복리시설, 어린이놀이터, D/A, 상가, 관리동 등의 설치로 일조권/조망권/환경권/소음피해/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행자 통로, 주변 도로 및 단지 외부의 공원 등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도로 인접 및 주변 부지의 공사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과정, 법규 변경, 현장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으로 인해 인근 해당 동 및 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사생활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상업시설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조명으로 인해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도로 측에 면한 세대는 소음에 의한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단지배치 특성 상 단지 내외의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 소음 및 전조등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계약자는 사업주체와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옹벽구조물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시공구조 상 보강시설물에 따른 점용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노출되는 옹벽이나 구조물의 마감은 변경될 수 있으며, 위치에 따라 시공되는 마감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어린이놀이터, 자전거보관소, D/A 및 환기창, T/L 생활폐기물 보관소, 가스정압기실 등 단지 내 시설(위치 및 개소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로 인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동별, 세대별로 해당 시설물과의 거리는 차이가 있고 이용이 필요한 시설물의 사용에 불편한 세대가 있을 수 있으니 이와 관련된 사항은 계약 시 충분히 확인 및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DA 위치는 실시공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계획된 근린생활시설로 인해 아파트 세대의 실내가 투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단지외와 외부도로 및 시설 사이의 경계담장 및 웬스는 행정관서의 지침 또는 주변단지 민원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난간은 사용자 안전을 고려하고, 법적 기준 충족을 위해 수직난간으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생활폐기물보관소, 근린생활시설 생활폐기물보관소가 설치될 경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폐기물로 인한 냄새, 분진, 해충 미관저하 등에 의해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생활폐기물 보관소가 단지 내 지하1층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 단지계획 특성 및 창호, 난간 사양에 따라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하며 지하주차장 이용시 지하주차장 층고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장, D/A)이 노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부세대는 소음, 바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차장 및 펌프실, 전기실 등의 환기와 제연팬의 급기/배기를 위하여 D/A(환기구), 채광을 위한 탐라이트 등(설치 시)의 지상 돌출물이 각 동 지상층에 설치될 예정으로, 이로 인해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분양홍보물(모형/배치도/분양 카탈로그 등)을 참조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일부 위치 및 형태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저층 세대는 옥외에 설치된 놀이/휴게 등의 이용과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습니다.
 - 단지 내 CCTV와 주차유도시스템을 위한 주차장 카메라는 범죄예방 및 입주자의 편의 향상을 위해 설치되므로 설치 및 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대한 위배로 보지 않음을 인지바랍니다.
 - 입주 시 단지 바닥 마감, 조경, 창호형태(유리난간 등), 입면장식물딩 등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 시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를 통한 이삿짐 운반을 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 창호의 위치 및 형태는 시공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엘리베이터 대수 및 사양은 최종 사업승인도서의 기준에 따라 시공될 예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 전 필요시 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수목식재로 인해 저층부 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시설물의 설치 위치, 규모, 내부계획 등은 현장 상황에 따라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소방차 전용주차구획 등으로 조경 및 시설물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를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단지 조경, 세부 식재계획(위치, 규모, 수종 등) 및 조경선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각종 시설물의 규모, 재료, 형태, 색채, 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배기탑 등 각종 시설물 또는 지상 구조물의 크기 또는 위치 변경에 의해 조경면적 및 식재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식재, 조경시설물, 각종 외부조명, 홈네트워크 설비 등의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 후 관리규약에 따름.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의 도로, 공원 등은 현재 상황 및 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당사의 시공 범위가 아니며, CG 및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실제 조성 시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에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부 세대는 옥외 보안등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옥외보안등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관리규약에 따릅니다.
 - 인공지반 녹지 하부에는 우수침투수에 대한 원활한 배수와 수목의 뿌리 침투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근기능으로 자갈배수층(또는 배수판)을 시공할 예정이며, 이외에 별도의 추가적인 배수/방근 자재 등에 대해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부 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정화조 시스템 유지, 놀이시설, 휴게시설, 수경시설, 포장시설, 수목관리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출입구 근방에 설계된 주동의 경우 소음 및 분진, 및 차량 헤드라이트 등에 의한 사생활 침해 및 차량출입표시기에 의한 소음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지하주차장 출입구 등 구조물로 인해 조망권이 일부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의 식재수종, 비상차량동선 및 어린이놀이터 위치 및 크기, 조경시설물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차 차단기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차량 출입구(비상차량동선 포함)과 보행자 출입구로 인한 인접세대의 사생활 및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사이버 견본주택,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 시설(학교, 지하철, 도로, 공공용지, 완충녹지, 경관녹지, 공원 등)은 허가관청 및 국가시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p>부대복리시설과 인접한 세대의 경우 해당 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설비시설 등으로 인한 조망권 및 소음, 진동에 의한 환경권, 사생활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저층세대는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설비시설 등으로 인한 조망권 및 소음, 분진 및 냄새, 진동에 의한 환경권, 사생활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p> <p>세대 위치에 따라 도로 및 차량 이동 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단지 내 각종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이용성에 차이가 있으니, 계약 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본시공 시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현장여건 및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주위 도로 폭, 단지 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조경시설, 포장), 단지 레벨 차에 따른 옹벽 및 사면, 자연석, 계단, 램프의 형태 및 종류, 노출범위,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모집공고일 기준 대지경계 주위 전선 지중화 작업이 미확정된 상태로, 향후 입주 시 지상에 전신주 및 전선이 위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입주 전후 계약자는 사업주체와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p> <p>• 단지 내에 지역 가스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접한 일부 세대의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	---

[단위세대]

구분	내용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발코니 입면 변화 및 창호 크기 및 위치 등의 차이로 서비스 면적과 채광 및 환기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발코니 입면 변화에 따라 서비스 면적 및 발코니 외벽라인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에 따라 확장 시 거실 및 침실의 형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바닥에 층간소음완충재가 시공될 예정이나,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창호 및 난간의 스펙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창호 개폐 방향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타입별로 전동빨래건조대 설치 여부가 상이하며, 약식 타입 59A, 72(A,OA,OB), 74(A,OA,OB), 105(A,OA,OB), 펜트하우스(143P,145P,159P,161P,167P,170P,244P)는 전동빨래건조대가 미설치 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단위세대는 서울시 건축심의 조건에 의해 오픈 발코니 설치 및 발코니 변화가 있을수 있으며, 전용면적이 같더라도 발코니가 상이할수 있으므로 제공되는 분양 카탈로그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심의 기준에 따라 101,2동 4,5,6,7호 라인, 103,4,5,6동 1,2,3,4호 라인 20층 이하 일부 타입에는 오픈발코니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 072.1489B→72OA 타입은 101,2동 4호라인 홀수층에 위치하며, 사업승인 도서기준 오픈발코니-2에 해당합니다. • 072.1489C→72OB 타입은 101,2동 4호라인 짝수층에 위치하며, 사업승인 도서기준 오픈발코니-1에 해당합니다. • 074.9528B→74OA 타입은 101,2동 6호라인 짝수층에 위치하며, 사업승인 도서기준 오픈발코니-1에 해당합니다. • 074.9528C→74OB 타입은 101,2동 6호라인 홀수층에 위치하며, 사업승인 도서기준 오픈발코니-2에 해당합니다. • 084.3174C→84OA 타입은 103,4,5,6동 3호라인 홀수층에 위치하며, 사업승인 도서기준 오픈발코니-2에 해당합니다. • 084.3174D→84OB 타입은 103,4,5,6동 3호라인 짝수층에 위치하며, 사업승인 도서기준 오픈발코니-1에 해당합니다. • 084.6615E→84OC 타입은 103,4,5,6동 2호라인 홀수층에 위치하며, 사업승인 도서기준 오픈발코니-2에 해당합니다. • 084.6615F→84OD 타입은 103,4,5,6동 2호라인 짝수층에 위치하며, 사업승인 도서기준 오픈발코니-1에 해당합니다. • 091.7708B→91OA 타입은 101,2동 5호라인 짝수층에 위치하며, 사업승인 도서기준 오픈발코니-1에 해당합니다. • 091.7708C→91OB 타입은 101,2동 5호라인 홀수층에 위치하며, 사업승인 도서기준 오픈발코니-2에 해당합니다. • 105.5415B→105OA 타입은 103,4,5,6동 1호라인 홀수층에 위치하며, 사업승인 도서기준 오픈발코니-2에 해당합니다. • 105.5415C→105OB 타입은 103,4,5,6동 1호라인 짝수층에 위치하며, 사업승인 도서기준 오픈발코니-1에 해당합니다. • 112.3989B→112OA 타입은 101,2동 7호라인 짝수층에 위치하며, 사업승인 도서기준 오픈발코니-1에 해당합니다. • 112.3989C→112OB 타입은 101,2동 7호라인 홀수층에 위치하며, 사업승인 도서기준 오픈발코니-2에 해당합니다. • 120.6467B→120OA 타입은 103,4,5,6동 4호라인 홀수층에 위치하며, 사업승인 도서기준 오픈발코니-2에 해당합니다. • 120.6467C→120OB 타입은 103,4,5,6동 4호라인 짝수층에 위치하며, 사업승인 도서기준 오픈발코니-1에 해당합니다. • 단위세대의 마감사양은 타입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상세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의 천장 높이는 2,400mm이며(펜트하우스 제외), 우물천장의 깊이는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부 세대 비확장시 하부 세대의 우물천장 깊이, 커튼박스 깊이, 등박스의 크기 및 깊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실의 크기는 마감, 단열재의 두께 등의 차이로 각종 홍보물에 표기된 치수와 상이할 수 있으며,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경 치수에는 천장 몰딩이나 걸레받이, 마루판의 치수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입주 시 실측을 통하여 가구 배치를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 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현장 여건 및 사용성 개선을 위해 목문의 사양(크기, 재질, 개폐방향, 디자인, 색상, 하드웨어 등) 및 창호 주변 벽체길이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욕실 출입문은 본공사 시 ABS도어로 시공됩니다.
- 침실과 욕실도어에 손끼임방지 장치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경첩의 종류 및 형태, 색상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고, 욕실 출입 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하자가 아닙니다.
- 욕실에 설치되는 위생기 및 액세서리류는 본공사 시 위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욕실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해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욕실 내부에 설치되는 욕조 하부에는 바닥 난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소방법에 의한 세대 스프링클러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커튼박스의 길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및 욕실, 주방의 경우는 상부층 세대 배관점검 및 보수를 위해 부득이 하부층 세대에서 천장배관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 온수 분배기 및 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하부장 내부는 공간이 협소할 수 있습니다.
- 세대의 발코니, 실외기실, 다용도실은 준 외부공간으로써 난방이 시공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은 훼손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시 구조체, 인테리어,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발코니 면적보다 실사용 면적은 줄어들어 시공되며, 선풍통을 가리기 위한 벽체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 바닥의 단차 높이는 배수배관 및 시공상의 이유로 세대별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다용도실 바닥 난방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단위세대 내부 벽체 재질은 공사 중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일부 벽체가 경량벽체로 설치되며, 중량물 설치나 못박음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벽체의 파손 또는 설치된 중량물의 탈락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골조와 이질벽체(경량벽체 또는 조적벽 등)의 접합부 처리와 단열재 설치 및 결로방지 단열재 설치 등을 위하여 골조의 일부가 이격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골조와 조적벽체 등의 이질재료가 접하는 부분에는 크랙하자 방지와 문틀 케이싱 설치를 위하여 일부 마감면과 골조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의 커튼박스의 길이 및 형태는 천장 내부의 설비 및 전기 배관 등의 시설물 위치로 인해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천장 몰딩의 재질 및 형태, 천장 마감 사양 등은 시공성 개선을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우물천장과 걸레받이는 본공사 시 하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PVC 위 래핑 또는 도장으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욕실벽(PD포함) 및 기타 조적벽 등은 현장 시공여건에 따라 전체 또는 일부가 비내력 골조 또는 경량벽체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확장부위 벽체 등 내부 단열재는 마감두께확보 및 품질향상의 이유로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시공되어 질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에 설치하는 가구 및 벽체 마감 등은 하자 및 사용성 개선등을 고려하여 일부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시공되어 질 수 있습니다.
- 평형별 제공 품목 및 선택형 제공 여부가 상이하오니 카탈로그 및 모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각 평형별 유상옵션과 무상옵션 항목은 평면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본 공사 과정 중 사용성 개선을 위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적인 확장공사 또는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외부 파손 및 훼손사항은 본인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단위세대 내에 실별 가구(장롱, 불박이장) 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감, 단열재 두께 등의 차이로 도면에 표기된 크기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바닥, 벽, 천장부분에 가구(주방, 침실, 욕실, 신발장 등) 및 거울(수납장 포함) 등으로 가려지는 부분은 원활한 시공진행을 위하여 최종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와 시공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자재의 독점, 품질, 품귀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동등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부 옵션 관련 사항은 분양계약 시 개별 공지 예정입니다.
- 현관 신발장의 경우 세대 통합 분전반 설치 공간 확보를 위해 동·호수에 따라 견본주택과 신발장 구성 및 설치 방향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타입별로 드레스룸 및 팬트리 내부 구성, 불박이장의 위치, 구성, 크기가 상이합니다. (불박이장의 위치는 같은 타입이라도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드레스룸 및 팬트리의 시스템 선반은 해당 실 창호 및 커튼박스 유무 또는 옵션 선택 여부에 따라 선반의 형태와 규격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타입별 주방가구 내부 구성, 도어 열림 방식 및 코너선반, 액세서리 제공 여부, 키큰장 사이즈, 하드웨어 등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방가구 하부에는 바닥 난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각 평형별 유상옵선과 기본제공 옵선 항목은 평면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옵션 선택에 따라 단열 및 벽체, 창호, 마감재 사양이 상이할 수 있으니, 옵션 선택 시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타입 평면구조에 따라 유상옵선으로 제공되는 상품의 형태, 장 길이, 디테일 등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마감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 형별, Type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모형, 마감재 리스트, 마감재 보드, 인쇄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에 실별 가구(장롱, 붙박이장) 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마감, 단열재 두께 등의 차이로 도면에 표기된 크기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가구에 적용된 도장 제품은 설치 후 시간경과 시 황변 및 표면의 평활도가 변형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 대비 도막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사용하는 각종 자재의 경우 수급 불가, 단종 품질 확보 등의 사유로 동등하거나 그 이상 제품으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석재류, 타일류 나누기 및 단차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주방, 아트월, 욕실, 발코니 등) • 세대 내부 마감자재의 색상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동일 모델로 설치한 경우에도 당초 색상, 디자인과 달리 보일 수 있습니다. • 내부 일반가구, 주방가구 등이 마감재 치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천연석으로 시공되어 있는 제품은 천연자재 특성상 갈라짐 현상이 발생하며, 자연적 패턴과 색상, 베인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모델하우스 설치된 자재와 패턴, 색상, 석재의 결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재 자체의 품질 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걸레받이, 벽지, 타일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에 설치되는 마감자재(가구, 석재, 인조석, 목재, 타일, 도배지, 걸레받이, 몰딩 등)는 각 자재의 특성상 색상, 무늬, 재질 및 패턴 등이 균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일 모델로 설치한 경우에도 견본주택과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자재의 품질상 하자판단은 KS기준에 따릅니다. • 천연자재(천연석재, 대리석접합타일, 원목마루, 온돌마루 등)는 자재 특성상 동일한 무늬나 색상, 질감의 공급이 어려우며, 자연적인 무늬로 인하여 갈라짐, 옹이, 흠집, 결, 무늬, 이색, 철분에 의한 변색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내 바닥재인 강마루의 구성 부재 중 심재의 재료는 내수합판 또는 고밀도 섬유판이 사용되며, 자재의 특성상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에 취약하며, 부주의에 따른 장시간 수분 노출 시 변색, 변형, 비틀림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석재 자재(천연석, 인조석 등)는 자재의 특성상 나누기 줄눈이 생기며, 이음부위가 육안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 타일 및 석재 자재의 나누기와 줄눈의 재질 및 색상은 디자인 및 시공성 개선을 위하여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장생산 자재(예: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 내부 마감재 (마루재, 타일, 도배지, 석재 등)는 실제 시공 시 자재의 고유 문양 및 색상에 따라 육안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전기/설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 등 전기 마감기구 사양 및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외 보안등 및 지하/지상층 CCTV는 본 공사 시 기능과 감시범위에 따라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CCTV 촬영으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부에 전기공급을 위하여 한전패드 스위치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옥외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경관조명 및 기타시설물 사용 시 입주 후 사용 분에 대하여 공통관리비가 부과됩니다. • 경관조명, 영구배수 및 기타시설물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에 따른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경관조명에 의한 야간 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상층 테라스 및 건축물의 측벽에 낙뢰 예방을 위한 피뢰설비가 시공될 수 있으며, 미관 및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및 상가 옥상 등에 태양광발전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 별 형태 및 층 수에 따라 엘리베이터의 속도 및 사양, 대수는 다를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승강로와 인접한 세대는 소음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상 1~2층(필로티 포함) 및 최상층은 세대 내 방법을 위하여 방범감지기가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시스템, 주차 위치 및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옥탑에 승강기 기계실 설치로 인해 일부 소음, 진동이 발생될 수 있고, 승강기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아파트 준공 전 공사용 운행 등 시험 운전을 거쳐 이관되며, 이에 따른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옥상에 경관조명, 공청TV안테나, 피뢰침, 태양광 발전설비, 이동통신설비 중계기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배선기구(콘센트, 스위치류), 전자식스위치, 홈네트워크 월패드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시로 설치되었으며, 본 공사 시 설치 위치, 설치 수량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설치 시점에 따라 일부 디자인 및 기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미설치 될 수 있습니다.
 -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설치하였으며, 위치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건본주택 내에 시공된 단위세대 조명기구는 생산업체 부도, 생산 중단 등의 사유로 동등 사양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선택에 따라 전기분전반 내 전기차단기 설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해당 옵션을 선택하지 않을 시 해당 기능을 위한 전기차단기는 미설치됩니다.
 - 입주 후 세대 내 조명기구 및 스위치와 관련된 인테리어 공사 또는 하자보수 이슈 발생 시, 반드시 해당 제조사로 문의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발생하는 제반 사항에 대해서 시공사는 귀책 사유가 없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위하여 주요 개소에 CCTV를 설치함에 따라 프라이버시가 불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력 및 통신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설물 위치는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KT 등)와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축물 내에 소방용 무선통신 안테나 및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중계기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가구 일체형 조명기구와 같은 복합기구 적용 시, 해당 기구는 일괄소등 스위치의 동작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 등에 의거, 기간 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설치 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 이동통신설비 설치 예정 위치 :
1. 옥상층: 101동, 102동, 103동, 105동, 106동, TOWER B동
 2. 지하층
 - 지하1층: EPS/TPS 3개소(105동, 106동, TOWER A동)
 - 지하2층: EPS/TPS 4개소(101동, 105동, 106동, TOWER A동)
 - 지하3층: EPS/TPS 5개소(101동, 104동, 105동, 106동, TOWER A동)
 - 지하4층: EPS/TPS 2개소(101동, 104동)
 3. 지상층
 - 101동, 102동, TOWER A동, TOWER B동: 지상10층, 지상25층, 지상40층 EPS/TPS
 - 103동, 104동, 105동, 106동: 지상7층, 지상21층, 지상35층 EPS/TPS
- 주방 상부장 뒷면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될 경우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상부장은 깊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세대 싱크대 하부장에 온수분배기 및 배관 설치로 실제 사용공간이 다소 협소 할 수 있으며, 개폐시 바닥이 일부 보일 수 있습니다.
 - 확장하지 않은 일부 발코니 천장에는 세대 타입에 따라 발코니 내부에 상부 및 하부세대용 우수, 배수 입상배관 및 가스배관 등이 노출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도시가스 배관은 캡(플러그)마감되며, 별도로 가스기기와 연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가스기기(가스렌지 등)와 도시가스배관의 연결(별도 수수료 발생)은 해당 지역 도시가스 서비스지역 고객센터(관할 지자체 및 구청 문의)로 별도 신청하여야 합니다.
 - 가스쿡탑 설치시 가스차단기, 전기쿡탑 및 전기+가스쿡탑제품(하이브리드) 설치시 가스, 전기차단기가 설치되며, 추가 설치 및 변경설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쿡탑 옵션가격은 기본제품 사양에서 미설치되는 품목에 대해 감액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 주방가구 하부에는 바닥 난방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방배기는 세대별 직접배기방식으로 외부에 루버(배기캡)이 설치됩니다.(단, 건축평면구조상 직접배기방식이 불가능한 평형은 공동배기방식으로 타평형과 배기성능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에어컨 설치 및 사용 시 응축수 배수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거실의 에어컨 응축수 배관은 하부에(스탠드타입 에어컨 기준), 안방에어컨 응축수 배관은 상부에(벽걸이타입 에어컨 기준) 설치되므로, 에어컨 설치 방식에 따라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거실과 안방 이외의 실에 에어컨 설치 시 입주자 부담으로 에어컨배관을 별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세대 내에는 냉매배관이 2개소(거실+안방) 설치됩니다.(에어컨 옵션 선택 세대 제외)
 - 시스템에어컨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옵션행사 시점에 별도로 문의바랍니다.
 - 화장실 천정에 설치되는 점검구의 크기와 설치 위치는 타입별, 층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욕실 하부에 설비기기(급수급탕분배기)가 설치되며, 실 시공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시공시 세대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환기설비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됩니다.
- 환기유니트는 가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 간 소음 발생량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세대 환기 장치 가동 시 운전소음이 발생하여 거실, 침실 내로 전달될 수 있으며,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성능 개선을 위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열교환 환기장비에는 필터가 설치되며, 사용하는 정도에 따라 교환주기는 상이할 수 있으며, 입주자 부담입니다.
- 실외기실에는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며, 화재시 덮개를 열고 사다리를 이용하여 아래층으로 피난할 수 있습니다.
- 하향식 피난구는 화재시 대피를 위한 시설이므로 대피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건을 적치할 수 없습니다.
- 평상시 하향식 피난구 덮개를 밝거나 덮개 위로 물이 넘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방법에 의한 세대 스프링클러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커튼박스의 길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벽체 및 바닥 내부에는 전기/통신용 배관 및 각종 설비배관(급수, 온수, 난방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못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시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의 가스계량기 위치는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급수, 급탕, 난방, 가스계량기 및 전기계량기는 원격 검침 방식이며, 세대 월패드로 표시된 검침량은 실제 검침량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 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부담 하여야 합니다.
- 일부 세대는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최종 마감재로 가려지는 천정 및 가구 뒷면 및 바닥과 욕실의 욕조의 바닥과 뒷면, 세면대 뒷면 등에는 별도의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입주기준 최종 마감재로 설치된 설비, 소방, 환기, 가스, 위생, 마감기구, 오배수 등의 부분에 대해 입주자의 요청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발코니

- 타입별로 오픈 발코니는 확장이 불가하며 위치, 사이즈가 상이하므로 계약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방형 발코니 바닥 마감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펜트하우스에 계획된 테라스 바닥 마감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접세대 및 동일세대 내 각 부위별 확장 여부(상하좌우)에 따라 단열재 설치로 인한 벽체돌출 및 실사용 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결로방지를 위한 단열재, 마감재 추가 설치될 수 있으며, 두께에 따라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고, 인접 벽체가 일부 돌출될 수 있습니다.
- 세탁실, 실외기실 등 발코니에 수도배관이 설치되는 공간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창문닫기 및 보온조치 등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실내습도가 높고 환기가 부족한 경우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각 세대에 설치된 환기시설을 이용하여 적정 습도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부 발코니 천장은 별도의 천장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환기장비 및 덕트, 가스, 에어컨, 스프링클러 배관 등이 노출되어 미관저하를 초래하거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확장 발코니의 경우 별도의 배관 설비가 설치되지 않으며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안방 발코니 및 주방 발코니(있는 경우에 한함)에 설치된 배수배관으로 인한 배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및 실외기실에 입주자가 설치한 세탁기 및 에어컨 실외기로 인하여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비난방구역으로 발코니에 설치된 수전류, 배수배관, 배수트랩(Trap)등은 겨울철 동결 및 동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의 발코니 또는 실외기실 천장에는 환기를 위한 전열교환기 및 덕트가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입상관, 배수드레인, 수전 등의 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환기 장치 가동 시 운전소음이 발생하여 거실, 침실내로 전달 될 수 있으며, 각 실내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성능 개선을 위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등에 의거 실외기실 및 다용도실, 발코니(발코니 미확장 세대 포함)에는 세대환기를 위한 장비 및 환기용 덕트가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본 공사시 배관이 노출되거나 내부마감(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천장고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는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을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하며,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용도실(세탁기실 및 발코니)의 바닥은 입주자가 설치한 세탁기의 배수로 인하여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가스배관 인입 위치에 따라 다용도실 창의 위치가 좌우로 다소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그릴 창의 크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네트워크 서버 유지보수 비용은 준공 후 3년간 무상 지원 됩니다. (단, IoT 및 기타 서비스 이용을 위한 단지 내 홈네트워크 서버 인터넷 회선비용은 준공 후 1년간 무상 지원) • 세대 내 조명기구와 스위치는 직류전원(DC)에 의해 동작하는 방식으로 조명기구와 스위치 간 UTP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어 시중에서 판매되는 교류전원(AC)용 조명기구와 스위치로 교체가 불가하므로, 계약자는 이 사항을 충분히 숙지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 후 세대 내 조명기구 및 스위치와 관련된 인테리어 공사 또는 하자보수 이슈 발생 시, 반드시 해당 제조사에 문의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제반 사항에 대하여 시공사는 귀책 사유가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홈네트워크 월패드, 통합스위치, 스마트스위치, 주방인터넷TV(이동식 PAD타입)의 UI 및 기능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홈네트워크 월패드와 주방인터넷TV(이동식 PAD타입)는 세대 내 WIFI 환경이 구축되어 있어야 하며, 무선인터넷 환경은 입주인이 개별 구축하여야 합니다. • IoT 연동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세대 내 무선인터넷 환경(인터넷이 가능한 어떤 사업자도 가능하며, 입주자 별도 가입 필요)이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 각 세대에 IoT 서비스를 이용한 홈네트워크 기기제어(월패드 터치스크린 및 스마트폰용 홈네트워크 APP 을 이용한 제어 범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를 제공하고, 이 서비스는 입주기간 종료 시부터 사용 가능하며, IoT 운영사의 사업 정책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는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스마트홈 IoT 가전제품 연동 제어 범위는 홈 IoT 서비스 제공사와 제휴된 가전제품에 한합니다. • 세대 내 월패드는 음성인식 기술이 적용되어 있으며, 부가 서비스 중 일부는 유상으로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일반 분양 및 민간임대 운영 관련 사항]

단지 운영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전체 단지 공동주택은 총 8개 동으로 건설될 계획이며 금번 분양분 6개동(101~106동(공공임대 포함), 이하 '분양동')과 향후 일반민간임대 2개동 (TOWER A, B동, 이하 '민간임대동')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사용승인일 이후 분양동과 민간임대동은 관리규약 및 관리단(입주자대표회, 임차인대표회) 등이 각각 구성되며, 관리사무소 역시 분양동, 민간임대동 별도 구성·운영됩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각 동에 분산되어 설치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각 동 주민공동시설의 운영 및 사용방식은 사업주체가 계약시 배포하는 단지별 관리규약에 따르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 등에게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요시설 교체 및 보수 발생 시 (엘리베이터 교체, 외벽누수 보수, 외벽페인팅 등)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분양동에 한해서만 업체 및 비용 결정 권한이 있으며, 민간임대동에 대한 결정 권한은 민간임대동 소유주에게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지하 자주식 주차장으로 총 주차대수는 약3,990대로 계획되어있고, 각 세대당 약 1.3대를 적용하여 분양분(공공임대 포함) 약2,980대, 민간임대분 약1,010대 주차대수를 계획하였습니다. 분양분(공공임대분 포함)과 민간임대분은 각각 계획된 주차 대수 만큼 이용 가능합니다. • 다만 본 단지는 분양분과 민간임대분이 혼합된 단지로 각 주거 유형별(분양분, 민간임대분)로 주차장이 구분되어 할당될 예정이나 지하 구조상 분양분과 민간임대분의 주차장 별도 구획이 불가하여 색상으로 구분할 예정입니다. 각 주거 유형별로 구분된 주차장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0조에 따라 각 분양분 및 민간임대분의 일부공용부분에 해당하므로 각 주거 유형별 입주자는 반드시 지정된 주차구역에 맞추어 이용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할당되지 아니한 다른 주거 구역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지지분에 따른 주차장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차영역은 347대로 별도 계획하였으므로 주차장 배치 및 사용상의 제한에 대해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별도로 계획된 근린생활시설용 주차구역 내에 공동주택 입주인은 주차를 할 수 없습니다. • 관리상 필요시 타용도의 입주자 및 이용자가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공용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외부공간은 공동주택(분양, 민간임대, 공공임대), 근린생활시설 입점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공공보행통로는 대지 내 불특정 다수가 24시간 보행통행 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안에서 정해진 통로로 입주인 외 외부인의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입주민 통행 전용화 및 차폐행위) 등을 하거나 이와 관련해 사업주체 및 관할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분양, 민간임대, 공공임대), 근린생활시설은 관리방식에 따라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시설별 별도 계량기를 통해 비용을 정산함을 인지하시고 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는 복합단지로서 단지 내 공동주택(분양, 민간임대, 공공임대), 근린생활시설로 계획되어 있으며, 각 용도 시설은 별도 임대, 분양되는 시설로서 운영 및 소유 주체와의 협의에 따라 해당시설의 규모 및 디자인계획, 운영방식의 변경 및 매각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통합 사용하는 공용부분에 대한 상하수도, 전기 등 유지, 보수, 관리는 입주자(입점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는 분양동, 민간임대동, 근린생활시설의 각 시설 면적 비율에 따라 관리됩니다.
----------	--

- 본 단지는 공동주택(분양분/ 민간임대/ 공공임대)의 주거용도와 근린생활시설이 복합적으로 계획된 단지로 주민공동시설에 따른 공유면적은 각 주민공동시설의 소유 형태와 각 건축물 연면적을 고려하여 배분되어 있습니다. 주민공동시설들의 출입구 및 동선은 중복되어 같이 사용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불편이 야기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① 법적 필수시설 (이하 '법정 시설')과 ② 분양동 (공공임대 포함)과 임대동 소유자 각각이 소유하는 시설(이하 특화 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지 내 법정 시설과 특화시설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각 주민공동시설의 설치 및 사용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 분양동 및 임대동 시설 구분 및 관리비용]

시설구분	분양동 (공공임대 포함)	민간임대동
법정시설1 (공유형)	어린이놀이터(TOWER A, 102동, 104동, 105동 측면) / 주민운동시설(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 106동 필로티하부) / 어린이집(101동, 104동, 105동 하부 설치) / 작은도서관(2개동 단위로 하부 설치) / 다함께돌봄센터(104동 하부 설치)	좌측 시설 공유
법정시설2 (단독형)	경로당 (103동, 106동 하부 설치)	경로당 (TOWER B 하부 설치)
특화시설	피트니스 / GX / 골프연습장 / 맘스라운지 / 독서실 / 티라운지(103, 104동) / 키즈라운지 / 코인세탁실 등 (2개동 단위로 하부 설치, 101·102동 / 103·104동 / 105·106동)	피트니스 / 골프연습장 / 프로그램실 / 로비라운지 / 건강관리실 / 사우나 등 (2개동 단위로 하부 설치 / TOWER A-B동)
관리비용	분양동 법정시설 / 특화시설 분양동 부담	임대동 법정시설 / 특화시설 임대동 부담

- 법정시설1은 분양동과 민간임대동이 면적 비율에 따라 관리비를 함께 부담하고 법정시설2(경로당)는 분양동과 민간임대동이 각각 별도 관리 및 비용을 부담합니다. 민간임대동 소유 및 입주자가 법정시설1 이용시 이에 대해 제한을 둘 수 없습니다.
- 분양동 및 임대동의 법정시설, 특화시설은 각 동에 설치된 면적을 기준으로 분양가에 반영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분양가에는 상기표 법정시설2 및 특화시설의 건축비 및 토지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분양동 소유자(입주자) 및 민간임대동 소유자(입주자)는 각 해당 시설의 관리 및 독점적 사용권이 있고, 분양동 및 민간임대동에 각 할당된 시설(법정시설2, 특화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에 대하여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 분양동 법정시설 및 특화시설은 사용승일일 이후 공동주택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이전까지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업주체 및 분양사업자가 제공한 관리규약에 따라 운영되오니, 계약 전 운영 방식에 대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이후, 분양동 법정시설 및 특화시설의 유지 및 운영(내부 집기 및 비품 구입 포함), 이를 위한 관리규약의 개정 등 모든 제반사항은 공동주택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행되어야 하며, 사업주체(시행위탁자, 시공사, 신탁사) 및 그 대리인은 해당 사항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민간임대동 법정시설2 및 특화시설의 유지 및 운영, 기타 관리에 관한 모든 권한은 해당 시설의 소유자에게만 있으며, 공동주택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은 해당 시설의 소유권에 관련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고 향후 해당 시설의 사용권한에 관한 관리규약 개정도 할 수 없습니다.
- 민간 임대동 법정시설2 및 특화시설의 운영 권한은 전적으로 민간임대 소유자에게만 있는 바, 어떤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 및 입주민은 특화시설의 운영에 간섭하는 행위(사용료 인하 요구, 사용인 제한 또는 확대 요구 등)를 할 수 없으며,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사업 주체 등에게 부당한 민원(플래카드 게시, 언론사 제보, 행정기관 민원제기, 소송제기 등)을 제기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임대 또는 분양시설이므로 공동주택 계약자는 공동주택 계약면적 외 시설에 대해 관련 시설물의 위치, 설계변경, 대지지분 변경 등의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탁업체 계약 체결에 관한 안내]

- 주거서비스는 입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전문업체의 위탁운영을 통해 제공되는 생활편의 서비스입니다. 상기의 주거서비스는 입주민 전용 앱(APP)을 통해 제공되며 사용자 부담 원칙으로 입주민의 신청에 의거하여 유상 제공됩니다. 단, 운영업체 및 현장 여건, 이용률, 입주자 서비스 선호도에 따라 서비스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행사와 주거서비스 위탁운영사(주)에스엘플랫폼)는 준공 이후 1년간 주거서비스 위탁 계약을 체결하며, 서비스 제공을 위한 APP 플랫폼 구축 비용과 위탁계약기간(1년) 동안 발생하는 기본 유지 비용(비서서비스, APP 플랫폼 유지보수비)은 시행사에서 부담합니다.

- 입주자는 주거서비스 위탁계약기간 동안 위탁업체의 변경을 임의로 요구할 수 없으며, 계약기간 종료후 위탁업체의 서비스 연장 또는 재선정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합니다. 위탁업체 재선정 이후 주거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 유지 비용(APP 유지보수비 등)은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 견본주택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서비스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1호,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 각 인증별 등급의 항목별 점수와 평가결과는 현장여건 및 본인증 심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각 인증에 제시된 시험성적서는 단순 샘플자료이며, 현장여건 및 본공사, 인증기관 협의 등에 따라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등
건축부문 설계기준(제1호)	단열 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를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 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제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제품 또는 최소소비효율기준 만족 제품(0.7kW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 송풍기용 제외)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제품 또는 KS규격에서 정해진 기준효율의 1.12배 이상 제품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 설치되는 수전류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 각 실별
전기부문 설계기준(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수변전설비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설치(라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공용화장실 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 내 공용화장실에 설치

▣ 내진성능 및 능력 공개

-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 3 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 합니다

구분	내진능력
수정 메르칼리 진도등급	VII - 0.204g (MMI 등급)

※ 내진능력 :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 2에 따라 산정한 수정 메르칼리 진도등급(MMI등급, I ~XII)으로 표기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관련 인증서

공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친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유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홀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오피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보증사고(보증약관 제4조)**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려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같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분양자(매도인)은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하기로 한다.

※ 상세내용은 보증회사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문의 바랍니다.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 VAT 포함)

구분	건축/굴토감리	전기감리	소방·통신감리
회사명	(주)건축사무소광장, (주)경호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 주식회사 나로이엔씨	주식회사 케이제이엔지니어링	소방 : 유원이앤에프(주) 통신 : (주)동도이엔씨
감리금액	17,955,000,000원	2,206,158,000원	소방: 2,713,553,010원 · 통신: 880,000,000원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

구분	사업주체	시공사
상호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법인등록번호	334-86-00815	334-86-00815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한강로3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한강로3가)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홈페이지 : <https://seoulone-ipark.co.kr>

▣ 견본주택 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들로1길 45(월계동, 서울원 아이파크)

▣ 분양문의 : 02-568-3032

▣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